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자유권의 침해와 나폴레옹 체제의 성격

‘자의적 구금’과 그 제도적 통제를 중심으로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사학과

안병찬

국문초록

통령정부와 프랑스 제1제국 시기에 걸친 나폴레옹 체제는 억압적 수단들, 특히 고등 경찰(haute police)의 동원을 통해 정치사회적 안정을 확보했지만, 동시에 억압의 규모와 강도를 제어하고 전제적 권력이 탄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들 역시 구비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제1제국의 탄생과 함께 원로원(Sénat Conservateur)의 내부 조직으로 설립된 자유위원회(Commission Sénatoriale de la Liberté Individuelle), 그리고 1810년에 도입된 추밀참사회(Conseil privé)의 연례 감찰 제도가 가장 대표적이었으며, 그들의 역할은 행정 명령을 통한 체포와 구금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고 ‘자의적으로’ 투옥된 이들을 석방함으로써 정부의 합헌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 나폴레옹 체제의 제도적 안전장치에 대한 조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올라르(Alphonse Aulard)를 비롯한 19세기 말-20세기 초의 학자들이 그러한 제도들이 걸치레에 불과했을 따름이라는 박한 평가를 내린 이후, 20세기 중반에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나폴레옹 체제를 연구했던 학자들은 자유위원회와 추밀참사회의 감찰을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서 누락하거나 간단하게 언급하는 수준에서 그치곤 했던 것이다. 나아가 월로치(Isser Woloch) 등 최근에 이르러 해당 제도들을 다시금 조명했던 소수의 연구자들 또한 그 성과의 통계적 정리와 평가에만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본고는 기존의 연구들이 간과했던 부분들을 다음과 같이 보강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그동안의 연구들은 ‘합헌성의 수호자’인 원로원과 자유위원회의 뿌리가 되었던 시에예스(Emmanuel-Joseph Sieyès)의 사상에, 특히 그 직접적인 이론적 원형이라 할 수 있는 1795년의 제안에 충분히 주목하지 않았다. 이는 국가적 안정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억압의 동원이 불가피할 때 그것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였으며, 이는 나폴레옹 체제 전체에 대한 구상과 그 설립이념과도 연결된다. 두 번째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억압을 제어하기 위한 제도들의 실현과 이후의 작동에 영향을 미친 보다 큰 배경, 특히 체제의 탄생을 이끌었던 사상적이며 경제적인 맥락과의 연결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제도들의 성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넘어 그것이 ‘어째서’ 최초의 이론과는 다르게 실현되고 그러한 결과를 거두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이다. 마지막으로 보강할 지점은 원로원 자유위원회에서 추밀참사회 연례 감찰로의 권한 이전이 내포했던 의미에 대한 분석이다. 이는 최초의 이론적 원형이 현실적 맥락 속에서 변형을 거쳤던 과정과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준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가치가 있는 사건이지만, 그러한 이행의 함의를 본격적으로 조명했던 기존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본고는 나폴레옹 체제가 보유했던 제도적 안전장치들의 기원과 탄생, 변화, 의의를 설명하는 종합적 서사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는 나폴레옹 체제 하에서의 권력의 성질 변화와도 연결됨으로써 체제 전반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논의에 또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Bonaparte Napoléon), 통령정부(Consulat), 프랑스 제1제국(Premier Empire), 고등 경찰(haute police), 원로원(Sénat conservateur), 원로원 자유위원회(Commission Sénatoriale de la Liberté Individuelle), 추밀참사회(Conseil privé), 국가교도소(Prison d'État)

학번: 2015-22461

목 차

국문초록	i
I. 서론	1
II. 시에예스의 이론과 제도적 실현	8
III. 명사들의 질서를 위한 억압	18
IV. ‘자의적 구금’과 “원로원 자유위원회”	26
V. “국가교도소”의 설립과 “추밀참사회”의 감찰	41
VI. 결론	50
참고문헌	52
Abstract	65

I. 서론

나폴레옹 체제의 경찰은 그 ‘폭정’에 대한 흑색 전설들을 만들어왔다.¹⁾ 특히 질서의 유지를 위한 고등 경찰(haute police)의 방법들 가운데서도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무기한의 구금은 전제적인 억압과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신화들을 탄생시켰고, 소설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비롯한 문학 작품들에도 영감을 제공함으로써 체제 전체의 이미지가 형성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학술 논고들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나폴레옹 체제, 특히 프랑스 제1제국의 성격을 규정하고자 했던 연구자들은 고등 경찰의 사용을 통한 일상적인 정치사회적 억압을 체제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들 중 하나로 간주해왔다.²⁾ 가령 20세기 전반의 연구자인 르페브르(Georges Lefebvre)는 국가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친 초법적이며 군사적인 강제력의 사용을 체제를 대표하는 일면으로 지목하며, 그것이 기원에서부터 “절대적으로 군사독재 체제였다”는 평을 내렸다.³⁾ 이후 20세기 중반의 고드쇼(Jacques Godechot) 역시 동일한 평가를 제시했고, 일부 정치 논평가들은 나폴레옹 체제의 고등 경찰이 현대의 파시스트 정부와 전체주의 국가들이 동원하는 억압에 방법론적 원형을 제공했다는 극도로 비판적인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⁴⁾

다만 이후의 연구자들은 억압의 군사적인 성격과 그 동기에 있어서 나폴레옹 개인의 의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재평가하며, 체제에 ‘군사독재’라는

-
- 1) 본고에서는 통령정부와 제1제국을 유사한 설립이념에 따라 하나의 가치를 추구했던 시기로 묶어 나폴레옹 체제로 지칭한다.
 - 2) 고등 경찰은 공동체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같은 ‘낮은’ 층위의 목적이 아닌 국가와 사회 전체의 안정으로 이야기되는 ‘높은’ 층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찰 행위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는 빈번하게 후자의 달성을 위한 전자의 보호 정지를 포함했으나, 사례에 따라선 엄밀한 구분이 어려운 경우들도 다수 존재했다; Jacques-Olivier Boudon *et al*, *Police et Gendarmerie dans l'Empire Napoléonien*(Paris: Editions SPM, 2013), pp.15-16.
 - 3) Georges Lefebvre, *Napoléon*(London: Routledge Classics, 2011).
 - 4) Jacques Godechot, *Les Institutions de la France sous la Révolution et l'Empire*(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51).

이름표를 붙이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양상을 보였다. 가령 20세기 후반의 대표적 연구자인 툴라르(Jean Tulard)는 군대가 평시의 정치사회적 통제에 개입했던 경우가 드물었을 뿐만 아니라 억압은 어디까지나 민간 행정 제도들에 근거하고 있었음을 강조했고, 따라서 나폴레옹 체제의 군사적이고 초법적인 성격이 다소 과대평가되어 왔다는 결론을 내렸다.⁵⁾ 이어서 베르주롱(Louis Bergeron)은 프랑스 제1제국의 명목적 형태였던 군주제의 요소들을 보다 부각시키고, 억압의 동원이 명사들이 주도하는 ‘근대적’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함이었다는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나폴레옹의 통치가 합의를 거쳐 탄생한 계몽전제군주제에 가까운 모습을 띠었음을 지적했다.⁶⁾ 그리고 보다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연구자들은 억압이 제도적으로 통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정치 엘리트 계층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 ‘집단적 기획’에 가까웠다는 해석을 더욱 강조해왔다. 나폴레옹 체제의 군사적, 권위주의적, 그리고 독재적인 성격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울지라도, 그것은 개인이 주도한 군사 독재라는 규정에 포함되기 어려운 측면들을 다수 보유한다는 것이다. 가령 당대의 억압을 논한 영미권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브라운(Howard G. Brown)은 정치사회적 안정이라는 목적성을 보다 강조함으로써, 그 체제가 국가의 안보를 대원칙으로 삼아 법과 제도를 정비했던 “안보 국가(Security State)”였다는 해석을 제시했다.⁷⁾ 이후 시발리스(Michael Sibalis)를 비롯하여 나폴레옹 체제가 현대 경찰국가의 전신과도 같았다는 해석을 제기한 연구자들 또한 당대의 국가 폭력에 대한 신화가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재생산되어왔음을 지적하며 그 제도적 통제와 적법성의 구비에 보다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⁸⁾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의 연구자

5) Jean Tulard, Teresa Waugh trans., *Napoleon: The Myth of The Saviour*(London: Methuen&Co., 1984).

6) Louis Bergeron, *L'Épisode Napoléonien I. Aspects Intérieurs 1799-1815*(Paris: Éditions du Seuil, 1972).

7) Howard G. Brown, *Ending the French Revolution: Violence, Justice and Repression From The Terror to Napoleon*(Charlottesville: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2006).

8) Howard G. Brown and Miller A. Judith ed., *Taking Liberties: Problems of A New Order From The French Revolution to Napoleon*(Manchester:

들 중 한 사람인 랑츠(Thierry Lentz)는 프랑스 제1제국이 어떠한 영역에서 권위나 강압을 행사했을 때 거의 모든 경우 그것을 통제하고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억압에 대한 다른 부문에서의 보상이든 우세한 권위에 대한 견제이든, 제국은 체제 내에서 발생하는 압력들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들을 항상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⁹⁾

즉, 억압의 동원을 중심으로 나폴레옹 체제를 규정했던 초창기의 연구들은 그 초법적, 군사적, 혹은 전제적인 특성들에 주목하며 그것이 혁명의 정치적 성과들을 파괴했다는 비판적 평가에 치중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나, 최근에 이르면 체제의 제도적 합리성과 수단의 목적성에 보다 주목하며 구체제와 혁명의 성과, 그리고 새로운 제도적 발명들이 뒤섞였던 복잡성 자체를 강조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하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당대의 경찰이 대중문화에서의 소재거리로 소비되었던 양상, 나아가 2차 세계대전 전후와 냉전시기의 정치적 논의에 동원되었던 전력으로 말미암아 경찰 행위의 구체적인 관행과 절차 자체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¹⁰⁾ 특히 고등 경찰의 통제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들은 지금까지 충분히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했으며, 그 가운데서도 체포와 구금의 조치가 ‘자의적(arbitraire)’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석방하기 위한 조직이었던 “원로원 자유위원회(Commission Sénatoriale de la Liberté Individuelle)”, 그리고 국가의 안정을 저해하는 죄수들을 구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2).

9) Thierry Lentz, *Nouvelle Histoire du Premier Empire III. La France et l'Europe de Napoléon 1804-1814*(Paris: Fayard, 2007).

10) 흔히 ‘경찰(警察)’로 번역되는 ‘police’라는 단어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국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 전반을 지칭하는 광의적 개념으로도 사용되었으며, 이는 질서정연하고 근대적으로 조직된 국가에 대한 계몽주의 조류의 ‘Polizeistaat’ 이론 속에 위치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당대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혹은 검찰), 그리고 그 기능을 공유했던 공직자들이 주체가 되어 치안의 유지와 규율의 강제를 수행했던 정부의 행위들로 그 의미를 한정한다. 광의적 ‘police’의 개념과 그 근대적 변형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Boudon, *Police et Gendarmerie*, p.19; Peter Hicks, “The Napoleonic ‘Police’ or ‘Security State’ in Context”, *Napoleonica. La Revue*, N.4(2009), pp.5-7.

금했던 “국가교도소(Prison d'État)”의 수감자 중 부당하게 투옥된 이가 있는지를 조사했던 “추밀참사회(Conseil privé)”의 연례 감찰은 특히 더 주목해볼 가치가 있다.

물론 그동안 이러한 제도들의 존재를 간략하게나마 다룬 연구자들은 존재했다. 우선 19세기 말-20세기 초의 혁명사학자들인 올라르(Alphonse Aulard)와 티리(Jean Thiry)는 그것이 나폴레옹의 독재에 정당성의 허울을 부여하기 위한 어용기관에 불과했음을 지적하며 독설에 가까운 비판을 남겼다.¹¹⁾ 다만 그러한 초창기 저작들 이후, 나폴레옹 체제의 제도적 안전장치들은 고드쇼나 툴라르 등 대표적 연구자들의 개론서 내 한두 개의 문단 수준에서 비판적으로 언급되는 처지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이 또한 대부분이 자유위원회만을 설명할 뿐 추밀참사회의 감찰이 거론되는 경우는 더욱 드물었다.¹²⁾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서야 월로치(Isser Woloch)와 시발리스가 충분한 분량을 할애하여 원로원 자유위원회의 존재를 조명했다. 그들은 정부 행위의 적법성을 보강하기 위한 제도가 존재했다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간주했고, 나아가 월로치는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보나파르트주의와 파시즘을 연결 지었던 20세기의 논의들을 비판했다.¹³⁾ 이와 유사하게 랑츠 역시 프랑스 제1제국을 다룬 개론서에서 해당 제도들을 언급하며 이를 억압적 수단들의 오용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을지언정 그 악영향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는 있었다는 평가를 남겼다.¹⁴⁾ 다만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했던 최근의 연구들 또한 각 기구를 보다 넓은 맥락으로부터 분리하여 독

11) Alphonse Aulard, *Études et Leçons sur la Révolution Française*(Paris : Félix Alcan, 1920); Thiry Jean, *Les Attributions du Sénat du Premier Empire Concernant la Justice et les Droits Individuels*(Paris: Librairie Arthur Rousseau, 1922).

12) Lefebvre, *Napoléon*, p.379; Godechot, *Les Institutions de la France*, p.543.

13) Michael Sibalis, “Arbitrary Detention, Human Rights and the Napoleonic Senate”, Brown, *Taking Liberties*, pp.166-184; Isser Woloch, *Napoleon and His Collaborators: The Making of A Dictatorship*(New York: W.W. Norton&Company, 2001); Jacques-Olivier Boudon, *Histoire du Consulat et de l'Empire 1799-1815*(Paris: Éditions Perrin, 2003).

14) Lentz, *Nouvelle Histoire du Premier Empire*.

립적으로 다루며 내용상으로는 그 성과의 통계적 분석들에 집중했다는 한계를 보유했다.

본고가 기존의 연구들에서 보강되어야 할 부분으로 포착한 지점들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상술한 제도적 안전장치들의 사상적, 혹은 이론적인 뿌리에 대한 고찰이다. 정부의 자의적 억압을 중앙 행정 권력과 별도로 존재하는 기구가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논의는 구체제 시기까지 올라가는 역사적 기억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 직접적인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이론은 총재정부시기에 이미 제시되었다. 그리고 제도적 안전장치들이 가지는 정치사상사적 의의와 나폴레옹 체제 하에서의 역할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탐구는 이러한 맥락을 함께 고려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하지만 그동안의 연구들에서 그 이론적 원형을 간략하게나마 언급했던 경우는 장 티리가 유일하며, 이 또한 기능상의 유사함을 거론하는 것으로 그쳤다. 더불어 해당 이론의 제안자였던 시에예스(Emmanuel-Joseph Sieyès)가 브뤼메르 쿠데타의 주축이자 나폴레옹 체제의 설계자나 다름없는 인물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사상사적 배경은 현행 연구 이상으로 조명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나폴레옹 체제의 설립 이념, 특히 그 사회경제적인 기획이 정치 사회적 억압의 양상과 그 통제에 미쳤던 영향에 대한 고려이다. 나폴레옹 체제는 혁명을 통해, 혹은 보다 장기적인 과정을 거치며 형성된 새로운 계층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집단적 기획이었고, 이는 전술한 제도들의 이론적 원형과 때로는 합치하고 때로는 모순을 빚었다. 그리고 제도적 안전장치들이 현실정치상에서 보여준 활동과 그 성과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선 체제 전반의 성격이라는 맥락이, 최소한 그 가운데서도 억압이라는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이 함께 고려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폴레옹 체제 전반의 성격을 논한 저술들에서 그러한 제도들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게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반대로 해당 제도들을 다룬 연구에서는 보다 넓은 맥락과의 유기적 연결이 부재했다. 따라서 그 실패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던 글에서조차 부실한 성과의 원인은 나폴레옹이 가한 정

치적 압력이나 안정에 대한 의원들의 갈망 정도로 간략하게 거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고는 체제의 설립이념이 나폴레옹 체제 하에서의 억압과 그 통제에 미쳤던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후자의 실제 활동이 ‘어째서’ 그러한 양상을 띠게 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자유위원회와 추밀참사회의 감찰이라는 두 대표적 제도 사이의 연속성과 단절에 대한 고찰이다. 프랑스 제1제국의 두 제도는 1810년에 이르러 전자의 기능을 신설된 후자가 사실상 대체하는 변화를 겪었고, 이는 최초의 이론적 원형이 체제의 설립이념이라는 맥락 아래서 현실적 변형을 거쳤던 과정과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준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가치가 있는 사건이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에서 두 기구는 거의 모든 경우 따로 다루어졌으며, 특히 주도권 이양의 의미에 주목한 연구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직 월로치만이 연구서의 한 장(章) 안에서 두 제도를 함께 다루었으나, 그 또한 기능의 연속성에 근거한 병렬적 서술만을 제시했을 뿐 권한 이전의 함의에 대한 본격적 논의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본고는 나폴레옹 시대의 ‘개인의 자유(liberté individuelle)’에 대한 억압, 그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었던 ‘자의적 구금(détention arbitraire)’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들을 보다 넓은 맥락 속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본고는 해당 제도들의 탄생과 변화, 의의를 함께 설명하는 종합적 서사의 구축을 지향하며, 이는 다시금 나폴레옹 체제에서의 억압적 권력과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어떠한 성질의 변화를 거쳤는지 보여줌으로써 체제 전반의 성격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다음의 구성을 취한다. 우선 제 2장에서는 개인적 자유의 억압 가운데서도 자의적, 혹은 예방적 구금이 당대에 가장 민감한 논제들 중 하나로서 부상했던 역사적 맥락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억압적 수단들의 사용을 통제하고 정부의 합헌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에에스의 이론을 살펴본 뒤, 그것이 나폴레옹 체제 하에서 현실정치상의 제도로 탄생했던 구체적인 과정을 다룬다. 3장에서

는 이후 해당 제도들의 현실적 작동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맥락으로서 나폴레옹 체제의 기획과 설립이념을 살펴본다. 이어지는 4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의 결과로 탄생한 원로원 자유위원회의 권한, 활동 양상,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 논하며, 마지막 5장에서는 국가감옥의 설립과 원로원 위원회의 임무를 대체했던 추밀참사회 감찰제도의 탄생,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지닌 정치적 함의에 대해 돌아본다.

II. 시에에스의 이론과 제도적 실현

프랑스 혁명의 전야로부터 나폴레옹 제국에 이르는 시기, 국가 폭력과 ‘개인의 자유’, 혹은 ‘자유권’의 침해는 정치적 토론의 공간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논쟁거리들 가운데 하나였다.¹⁵⁾ 그리고 혁명의 거의 모든 정치적 단계들에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동원되었던 국가폭력, 혹은 억압적 수단들의 사용은 그 강도와 성격에 따라 여러 층위와 범주들로 구별되며, 그 가운데서도 ‘자의적 구금’은 그 상징성과 사용 빈도의 측면에서 특별히 주목해볼 가치가 있다.¹⁶⁾ 이는 최고 행정가, 경찰장관, 혹은 상황의 필요에 따라 여타의 경찰력 행사주체들에 의해 발행되며, 특정한 인물을 체포하여 투옥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이었다. 그리고 당대의 평자들이 제시했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어떠한 구금의 명령이 ‘자의적’이 되도록 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특성들이다. 첫 번째로, 그것은 체포의 적법성을 보장할 근거가 부족한 명령이다. 이는 피구금 대상이 실제로 발생한 위법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없거나, 어떠한 위법 행위가 아직 발생하지 않

15) 자유권과 사회권은 인간의 기본권을 분류하는 1차적인 범주로, 전자는 권력의 침해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동할 개인의 권리들을 포괄한다. 프랑스 혁명을 전후로 한 시기의 작가들이 사용했던 ‘개인의 자유’라는 표현 또한 자유권의 의미로 간주될 수 있다.

16) 정치사회적 질서 정립을 위한 국가적 노력들 가운데, 통제되고 정당화된 억압의 사용과 국가 폭력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몇몇 이론적 논의들이 존재해왔다. 대표적으로 법철학자 세르지오 코타(Sergio Cotta)는 적법한 강압과는 달리 국가 폭력은 갑작스럽고, 예측 불가능하고, 불균형한 특성을 보유했음을 지적했다. 그의 논의에서 폭력은 내적으로는 규칙성과 정확성을 결여하고, 외적으로는 광범위하게 수용되는 사회적, 도덕적, 법적 기준에 위배되고, 목적에 있어서는 구체적이지 않은 모호한 관념들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할 때 나폴레옹 체제 당시 동원된 여러 종류의 억압적 수단은 일정 부분에서 국가 폭력으로 간주될 특성들을 보유하나, 본고에서는 여전히 엄밀한 구분이 어려운 사례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여 국가 폭력보다는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억압적 수단의 동원’, 혹은 ‘고등 경찰’로 완화된 표현을 사용한다. Howard G. Brown, “Domestic State Violence: Repression From The Croquants to The Commune”, *The Historical Journal*, vol. 42, no. 3(1997), pp.597-600.

았거나, 특정한 행동이 구금을 요구하는 범죄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일반법 상의 조항이 부재함에도 명령 발행인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판단에 따라 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는’ 인물을 체포하는 조치였다. 따라서 이는 구체적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닌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차단하는 조치라는 의미에서 “예방적 구금(détention préventive)”이라고도 불리었다.¹⁷⁾ 두 번째로, 그것은 규정된 사법적 절차를 무시하며 실행된다. 이는 당대의 일반법에서 규정된 피고의 기소와 수사, 재판, 최종 판결에 이르는 절차와 무관하게 초법적으로 실행된 명령이었으며, 주로 대상을 재판이나 정해진 석방일 없이 구금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었고, 그 목적은 자유의 박탈을 통한 규율의 강제나 사회로부터의 격리 그 자체였다. 이러한 특징들로 말미암아, 당대 계몽주의 작가들의 논변 속에서 예방적 구금은 개인의 자유와 이를 동원한 정부의 정당성에 치명적 손상을 가하는 악습으로 여겨지곤 했다.¹⁸⁾

이러한 예방적 구금이 혁명기, 보다 구체적으로는 테르미도르 반동 이후와 나폴레옹 집권기에 정치적 논쟁의 장에서 지녔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과 연결된 역사적 기억들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그 가운데서도 나폴레옹 시기에 사용된 체포 명령의 제도적 전신으로 간주될 수 있는 구체제의 “봉인장(lettre de cachet)”과, 산악파 집권기에 중앙의 권력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억압적 수단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혐의자법(Loi des suspects)”은 특히 주목해 볼 가치가 있다.¹⁹⁾ 우선 왕의 명령서

17) 본고에서는 자의적 구금이라는 명명 자체에 비판적 가치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중립적 기술을 위해 해당 제도에 대한 논평을 다루는 경우 외에는 예방적 구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8) Brian-Eugene Strayer, “Lettres de Cachet and Social Control in the Ancien Regime”, PhD Diss., The University of Iowa(1987), p.52.

19) 봉인장은 왕의 권위 아래 발행된 명령으로, 붉은 밀랍으로 봉인되어 수취인 외에는 개봉이 불가능한 비밀스럽고 사적인 명령이었으며, 본디 의회의 소집이나 여러 행사들과 관련한 지침 등 다양한 행정명령의 전달수단이였다. 하지만 앙리 4세와 루이 13세 시기부터, 봉인장은 국가에 위협적이라 여겨지는 이들을 구금하기 위한 일종의 구속영장이자 사회적 통제의 수단으로 적극 사용되기 시작했다. 다만 계몽주의자들의 비판과 마찬가지로 그 활용이 자의성을 내포하고 국왕의 특권과 밀접하게 결합해 있었을지라도, 그 발행은 일정한 행정적 절차에 의

이자 질서 유지를 위한 체포영장으로 사용되었던 봉인장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라는 ‘새로운’ 가치들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악습을 대표했고, 혁명을 전후로 한 시기의 정치 논설들에서는 구체제의 자의적이고 전제적인 통치 자체를 응집한 상징과도 같이 여겨졌다. 그리고 봉인장이라는 명령의 형식은 1790년 3월의 폐지령을 통해 사라졌지만, 예방적 구금이라는 수단 자체는 이제 반혁명에 대한 처벌의지와 결합하여 혁명의 거의 모든 정치적 단계들에서 사용되기를 계속했다 그 가운데서도 1793년 9월 17일에 공표된 반혁명 혐의자법은 “공화국의 영토 안에서 여전히 자유의 상태에 있는 모든 혐의자를” 체포할 것을 공표함으로써 그 규모에 있어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억압의 동원을 가능케 했다. 이는 전체로서의 혁명을 수호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에 포함되는 특정한 권리들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었으며, 해당 논리는 이후 나폴레옹 체제의 고등경찰이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동원되었다.²⁰⁾

이러한 경험은 테르미도르 반동 이후 정계에 복귀한 온건-보수적 엘리트들이 모든 ‘자코뱅적인’ 논리에 대해 강박에 가까운 거부감을 품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1794년 이후의 프랑스는 “공포정치의 정치적, 문화적, 그리고 존재론적 체험”이 낳은 산물과도 같게 되었으며, 테르미도르파는 2년여에 걸쳐 도입된 모든 급진적 변화들을 무효화하고 “민주주의와 평등의 위협”을 차단함으로써 ‘1789년의 이상’으로 회귀하려 했던 것이다.²¹⁾ 이를 위해 1795년의 헌법은 계몽주의의 정치사상적 조류에서 오랫동안 이어져온 권력의 분할과 균형에 대한 이론을 다시금 꺼내들었다. 하지만 당시 제헌위원회 내에는 권력의 파편화가 혁명적 성과들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리

거하여 이루어져야만 했으며, 이후 명령이 담고 있는 판단이 적절한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검토하기 위한 절차 역시 마련되어 있었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Strayer, “Lettres de Cachet”, pp.43-141.

20) 공포정치 시기의 억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알베르 소블, 최갑수 역, 『프랑스혁명사』(서울: 교양인, 2018).

21) Andrew Jainchill, *Reimagining Politics after the Terror: The Republican Origins of French Liberalism*(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2008), p.27.

라고 예견한 이들 역시 존재했다.²²⁾ 그들은 권위주의적 강제력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자유주의적인, 혹은 부르주아적인 혁명의 성과를 정착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권위주의자(liberal authoritarian)”로, 혹은 훗날의 “브뤼메르파”이자 친-나폴레옹 정치 엘리트들로 느슨하게 지칭될 수 있는 이들이었고, 그 가운데서도 1795년의 헌법 작성 과정에서 대안적 형태의 권력을 제안했던 시에예스의 논의는 훗날 나폴레옹 체제에서 실현될 제도들의 원형을 제공했던 이론이었다.²³⁾

혁명의 아버지, 브뤼메르 쿠데타의 기획자, 그리고 나폴레옹 체제의 설계자. 이러한 수사들로 설명되는 시에예스는 95년 헌법의 가장 적극적인 비판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여름에 있었던 헌법토론에서, 그는 극단적으로 분할과 균형의 원칙을 강제당하고 입법부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부여된 정부의 구성이 자연과 비효율성을 낳을 것이라고 비판하며, 통합된 중앙의 행정 권력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강력한 행정 권력이 전제주의로 변질될 위험성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시에예스는 테르미도르 2일과 18일에 걸쳐 정부의 합헌성을 보장할 안전장치인 “헌법재판소(Jury constitutionnelle)” 이론을 발표하는 것으로 답했다.²⁴⁾ 통상의 입법부와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 기구였던 헌법재판소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을 담당했는데, 그 첫 번째는 새로운 입법의 합헌성에

22) 18세기 계몽주의 조류 속 대표적인 공화국 이론들이 고대의 공화국들을 전범으로 삼았던 것에 근거하여 이를 ‘고전적 공화주의’의 흐름으로 범주화하기도 한다.

23) 자유주의적 권위주의자라는 규정은 나폴레옹 시기의 억압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연구자 하워드 브라운이 최초로 적용했던 것이며, 이후 총재정부에서 제국 시기를 다룬 저자들에 의해 빈번하게 사용되는 범주가 되었다. Jainchill, *Reimagining Politics*, p.198; Brown, *Ending the French Revolution*.

24) Emmanuel-Joseph Sieyès, Paul Bastid ed., *Les Discours de Sieyès dans les Débats Constitutionnels de l’An III 2 et 18 Thermidor*(Paris: Librairie Hachette, 1939), pp.22-23; Emmanuel Joseph Sieyès, Mrs. M. Blondel et al trans., Oliver W.Lembcke and Florian Weber ed., *Emmanuel Joseph Sieyès: The Essential Political Writings*(Leiden: Brill, 2014), p.153; Jainchill, *Reimagining Politics*, p.17; p.41; Michael Broers ed., *The Napoleonic Empire and the New European Political Culture*(London: Palgrave Macmillan, 2012), p.21.

대한 이의제기를 검토하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 항소법정으로서의 역할이며, 두 번째는 헌법의 수정에 대한 토론과 결정을 담당하는 개헌 위원회로서의 역할이었다.²⁵⁾ 그리고 의회 연설 당시 가장 큰 논란을 낳았던 세 번째 역할은 정부의 억압, 특히 자의적 구금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이었다.

시에예스는 법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구금되거나 극형을 선고받은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억압적 행위의 정당성을 통제할 것을 제안했으며, 위원회는 다음의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되는 사건들을 다루도록 설계되었다. 첫 번째는 제한되지 않고 무법적이며, 원칙이 부재하는 권력의 행사로 인한 침해이다. 이는 정부의 활동에서 실정법을 위반하는 전제적 성향이 나타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두 번째는 입법자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실정법상의 균열로 말미암아 법의 내용 자체와 그 해석, 적용에 있어 자의성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에 있어서 인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위원회는 “자연법적 형평(équité naturelle)”으로부터 도출된 권리들에 근거하여 그들을 구제하는 “자연법에 근거한 판결권(jurisdiction naturelle)”을 행사한다.²⁶⁾ 이는 실정법의 상위에 위치하는 권리들을 방패삼아 권력의 오용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하는 기능이며, 그러한 권리들은 영속성을 보유하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실정법과는 달리 모든 경우의 침해에 대한 즉각적 구제가 가능하다. 나아가 시에예스는 이러한 권한이 그 형태에 있어서 혁명의 과정에서 폐지되었던 사면(grâce)의 제도를 연상시킨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사법을 보유한 국왕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보편적 권리를 정당성의 원천으로 두는 구제는 구체제의 특권과 전혀 다른 의미를 보유한다는 것을 강조했다.²⁷⁾

25) Marco Fioravanti, “Sieyès et le jury constitutionnaire: perspectives historico-juridique”,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no.3(2007), p.89-99; Sieyès, *Les Discours de Sieyès*, pp.33-40; Sieyès, *The Essential Political Writings*, pp.170-177

26) Sieyès, *Les Discours de Sieyès*, pp.40-43; Sieyès, *The Essential Political Writings*, pp.179-181.

27) “그것은 더 이상 사면이 아닌 정의입니다(ce n’est plus grâce, c’est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권한들은 당대의 토론자들과 후대의 법제사학자들에 의한 비판에 직면했다.²⁸⁾ 자연법과 보편적 권리라는 ‘형이상학적’ 원칙은 구체적인 사법적 판단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일반법의 근간으로 존재하는 헌법의 의미와 권위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²⁹⁾ 하지만 이러한 비판들은 테르미도르 2일과 18일의 제안을 자연법과 헌법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시에예스의 논의로부터 분리하여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³⁰⁾ 시에예스는 실정법의 원천이 되는 자연법의 존재를 도입함으로써 계약론의 전통을 계승했지만, 동시에 헌법이 본질적으로 역사성을 보유했으며 각 시대의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반드시 재창조되어야만 하는 구체적인 규범임을 강조함으로써 과거의 논의들과 차별을 두었다. 헌법 자체는 공동체가 존재해야 할 당위성과 그 목표와 같은 영속적 가치들에 대해 진술하지 않으며, 오직 시대적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공공의 권력들 사이의 실질적 상호작용과 그 권한의 범위들을 설정하는 실용적인 문서의 역할을 전담한다는 것이다.³¹⁾ 그리고 자연법과 헌법은 전자로부터 도출된 일련의 영속적 권리들에 대한 선언문을 매개로 삼아 연결된다. 이 선언문은 헌법 작성과정에서 통제력을 행사하는 대원칙이자 그 궁극적 목적으로서, 나아가 공권력이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상위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하며, 따라서 선언은 서문의 형태로 반드시 본문 앞에 배치되어야만 한다.³²⁾ 이처럼 시에예스의 논의에서 자연법과 보편적 권리들은 헌법의 상위 원리이자 목적으로서 현실정치상에 구속력을 행사했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위원회의 권한은 이러한 사상적 맥락 아래서 논리적 완결성 지니게 되는 제도였다.

justice)”. Sieyès, *Les Discours de Sieyès*, p.41.

28) Marco Goldoni, “At the Origins of Constitutional Review: Sieyès’ Constitutional Jury and the Taming of Constitutional Power”,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 32, no. 2(2012), pp.225-233.

29) Fioravanti, “Sieyès et le jury constitutionnaire”, p.100.

30) 이하 헌법론에 대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 Sieyès, *The Essential Political Writings*, pp.9-33; pp.118-126.

31) Ibid., p.126.

32) Ibid., p.118.

그리고 총재정부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시에예스의 제안은 통령 정부의 설립부터 제 1제국의 탄생에 이르는 시기를 거치며 단계적으로 실현되었다. 그 첫걸음이었던 1799년 12월의 브뤼메르 쿠데타는 시에예스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정치 엘리트들이 ‘무정부상태’로 전락한 국가에 제시했던 극약 처방이었고, 보나파르트 장군은 그 얼굴이 되는 동시에 무력을 제공할 협력자로서 선택된 인물이었다.³³⁾ 그리고 의회의 장악 직후 설립된 제헌위원회는 시에예스의 구술을 받아 적은 청사진에 기초하여 새로운 헌법 작성에 착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초안에는 상당한 수정이 가해졌다. 하지만 “위로부터의 권위와 아래로부터의 신뢰”라는 헌법의 대원칙, 그리고 95년 헌법재판소 이론을 계승한 조직이었던 원로원(Sénat conservateur)의 구성과 권한은 큰 변경 없이 실현될 수 있었다.³⁴⁾ 원로원은 호민원과 입법원 의원들, 그리고 통령의 지명권을 보유하는 중앙 권력의 견제 기구이자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로부터 독립된 “합헌성의 수호자”였으며, 법안(acte)의 합헌성을 심사하여 파기 여부에 대해 최종의 결정을 내리는 권한과 원로원 결의(Senatus-consulte)를 통해 헌법을 수정하는 권한을 보유했다. 그리고 그 기능은 이후 제국 시기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에 걸쳐 더욱 보강됨으로써 시에예스가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자 했던 권한들을 완비해 나갔다.³⁵⁾

33) 브뤼메르 쿠데타의 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 Thierry Lentz, *Le Grand Consulat: 1799-1804*(Paris: Fayard/Pluriel, 2014), pp.47-115.

34) 대폭적 수정이 가해진 부분은 정부 고관의 선출을 주된 권한으로 보유하는 최고 행정가인 “대 선출관(Grand Electeur)”의 직책명이 “제1통령(Le Premier Consul)”으로 변경되고 행정과 입법 전반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 이었다; 다만 보나파르트의 영향력 아래 “모두가 자신에게 경의를 표하기를 멈추질 않는 대신 그 의견은 덜 경청하곤 하는 토론”에 환멸을 느낀 시에예스는 통령직을 거절하고 정계에서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표했으나, 회유 끝에 원로원 초대 의장으로 취임하여 60명의 구성원 가운데 29명을 단독으로 선발하는 권한을 얻어내며 현직에 남기로 합의했다. M. Alexandre Parodi, *Le Conseil d'État: Son Histoire à Travers les Documents d'Époque 1799-1974*(Paris: Éditions du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1974), p.343.

35) 중앙 정부는 행정기구와 입법기구로서의 역할을 겸하는 최고 회의체인 국가참

더불어 통령정부는 시기에 강화된 정치사회적 억압은 그것을 통제할 제도적 안정장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자극했다. 가령 1801년 2월에는 정부 요인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와 지방에서의 비적 행위를 종식한다는 명분으로 주요 도들에 특별재판소(Tribunal Spécial)가 설치되었다. 이는 배심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항소가 불가능한 군사재판소라는 점에서 구체제 군사법정(Cour Prévôtale)이나 1793년의 혁명재판소를 계승한 기구였고, 이후 혁명력 1804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3-4천여 명에 달하는 이들이 이곳을 거쳐 처형, 추방, 혹은 중노동형을 선고받았다.³⁶⁾ 동시에 경찰력을 행사하는 조직들의 규모 또한 크게 증대되면서 예방적 구금과 검열로 대표되는 일상적 억압 역시 더욱 가시적이 되었다.³⁷⁾ 가령 파리에서는 경찰지사

사회(Conseil d'État), 참사회에서 제출한 입법안에 대해 각각 토론과 투표만을 전담하는 기구들인 호민원(Tribunat)과 입법원(Corps législatif), 그리고 보수 원로원으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원로원은 다른 공직을 맡을 수 없는 40세 이상의 의원 8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시 통령 세 명의 협의로 선출된 31명과 초대 의장 시에에스가 선출한 29명으로 출발하여 이후 정원인 80명에 이르기까지 2년에 한 번 새 구성원을 선발했다. 새 의원이 될 후보들은 각각 제1통령과 호민원, 그리고 입법원이 추천한 세 명의 저명인사로 이루어졌다. Thiry, *Les Attributions du Sénat*, pp.7-12; Parodi, *Le Conseil d'État*, pp.79-80; Martyn Lyons, *Napoleon Bonaparte and The Legacy of The French Revolution*(Houndmills: Macmillan, 1994), pp.63-64; Vida Azimi, *Les Premiers Sénateurs Français: Consulat et Premier Empire 1800-1814*(Paris: Picard, 2000), pp.17-26; Daniel Amson, *Histoire Constitutionnelle Français de la Prise de la Bastille à Waterlod*(Paris: Lextenso Éditions, 2010), p.338; 더불어 원로원 결의는 통상의 입법과정을 우회하여 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었기에, 정부의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예외적 수단'으로서의 기능 또한 보유했고, 이는 주로 원로원과 제1통령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원되었다. 원로원 권력의 보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을 참조. Amson, *Histoire Constitutionnelle Français*, pp.427-490.

- 36) 다만 이러한 구체제적 특징들이 당대의 우려를 낳았음에도 특별재판소는 구술 논쟁을 허용하고, 피고인이 변호인을 대동 가능하고, 재판과 처형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혁명이 가져온 사법적 변화들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 Brown, *Ending the French Revolution*, pp.326-330; Brown, "Domestic State Violence", pp.613-616.
- 37) 이하 경찰력의 보강에 대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 Boudon, *Police et Gendarmerie*, pp.57-59; Woloch, *Napoleon and His Collaborators*, pp.186-189; Bergeron, *L'Épisode Napoléonien I*, p.18

(Préfet de Police)라는 이름으로 구체제의 파리지경국장(Lieutenant de Police)이 부활했고, 각 도에는 과거의 지사를 연상시키는 강력한 권한을 보유한 도지사(préfet)들이 배치되었다. 나아가 지역 단위별 행정경찰, 예심판사(magistrat investigatif)나 검사(procureur)의 지휘 아래 수사를 담당했던 사법경찰, 그리고 일상적 범죄 소탕과 치안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헌병대(Gendarmes)의 인원 역시 크게 보강되었다.³⁸⁾

이후 사회적 질서와 경제적 안정의 회복이라는 성과는 억압의 과도함을 규탄하던 입법부 내의 비판자들을 회유하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전 혁명가들은 암울한 시기의 기억들을 연상시키는 형태의 억압들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거둘 수 없었다.³⁹⁾ 가령 시해파였던 베를리에(Berlier Théophile)는

38) 제1통령, 혹은 황제에 의해 직접 지명된 도지사들은 ‘작은 황제들’이라 불리었을 만큼 각 도의 행정 전반을 관리하며 막대한 권한을 행사했고, 하위 행정단위인 군(arrondissement)의 군수(sous-préfet)들과 면(commune)의 면장(maire)들을 총괄하는 감독관이자 지방 경찰행정의 총 책임자이기도 했다. Hicks, “The Napoleonic ‘Police’”, pp.5-6; Tulard, *Napoleon*, p.87;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공존하는 프랑스의 현 경찰제도는 혁명기에 탄생하여 나폴레옹 시기에 정착되었다. 검사와 예심판사는 법무장관 휘하의 사법경찰에 속했으며, 원칙적으로 전자는 사건의 소추와 재판에서의 공소유지, 후자는 검사가 예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재판 이전의 조사와 현장에서의 사법경찰력 총지휘를 담당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두 직책 모두가 수사권을 행사하며 행정경찰력에도 일정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정식 기소와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선 예방적 구금의 동원을 통해 대응하는 관행이 정착되었다. 헌병대의 임무는 행정경찰의 일상적 질서유지 행위와 상당 부분 중첩되었으나, 이들은 군에 속한 것으로 간주되어 경찰장관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Boudon, *Police et Gendarmerie*, pp.23-25.

39) Lefebvre, *Napoléon*, pp.114-116; 산악파 독재기와 나폴레옹 체제 아래서의 억압의 양상은 행정, 혹은 사법 권력이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대규모의 체포와 구금, 혹은 처형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매우 흡사했으며, 당대에 지식인들의 우려를 자아냈던 것도 이러한 형식상의, 혹은 법적 성질상의 유사성이었다. 다만 민중 혁명적 성과를 보존키 위해 억압적 수단들이 동원되었던 전자와는 달리, 후자의, 특히 통령정부 시기의 억압은 공포정치시기에 주도권을 쥐었던 ‘자코뱅’ 세력의 일소와 명사 계급이 주도하는 자유주의적이며 엘리트주의적인 혁명의 보존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했다. 나아가 억압의 강도와 규모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점을 기준으로 사형 집행의 규모를 비교해 볼 때, 우선 산악파 독재가 최고조에 달했던 1793년 12월에 처형된 이들은 약 3400명, 이듬해 1월에는 약 3500여명에 달했고, 이후 테르미도르 반동에 이르기까지 매 월 최저 600여명에서 최대 1400여명에 이르는 이들이 극형에 처해졌

1801년 6월 보나파르트를 만나 특별재판소의 선고와 대대적 체포 중 상당수가 어떠한 합법적 기소나 증거의 제시 없이 이루어져 일부는 “그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만 했고, 헌법상의 조항들 또한 심각한 자유의 침해를 정당화시킬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⁴⁰⁾ 시에예스로 하여금 ‘자연법에 근거한 판결권’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만들었던 고민이 보다 광범위한 정치 엘리트 집단 내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자연히 일상적으로 남용되는 경찰력의 과도한 사용에 제제를 가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불거졌으며, 원로원은 그러한 임무를 맡기에 가장 적합한 기구로서 여겨졌다. 원로원의 이론적 원형이 된 1795년의 헌법재판소 논의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위원회의 조직은 이미 예고된 바가 있었고, 그 제안자였던 시에예스 본인 또한 현직 의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의적 억압의 통제를 위한 안전장치인 원로원 자유위원회는 이러한 정치사상적 흐름의 끝에 탄생했다. 하지만 현실정치상에 실현된 제도와 그 이론적 원형 사이의 간극, 나아가 탄생 이후의 변화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위치했던 보다 넓은 시대적 맥락을, 특히 나폴레옹 체제의 설립 이념 속에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회경제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아야만 한다.

다. 이에 반해 통령정부 시기 처형의 규모는 1801년 전체를 통틀어 약 800여명, 이후 1804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700명 이상, 900명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유지되었고, 이후 제국 시기에는 대규모의 처형이 중지되며 예방적 구금이 가장 기본적인 억압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즉, 극형을 선고받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줄고 혐의자의 처분이 구금이나 추방, 중노동형으로 대체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나폴레옹 체제 하에서의 억압의 강도는 공포정치시기에 비해 완화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공포정치시기와 통령정부 시기 억압의 규모에 대한 통계는 다음을 참조. Donald Greer, *The Incidence of The Terror During The French Revolution: A Statistical Interpretation*(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35); Brown, *Ending the French Revolution*.

40) 이에 제1통령은 베를리예가 마치 변호사들처럼 이야기한다며 농담을 던진 뒤 별다른 답변 없이 대화를 마무리지었다. Antoine Claire Thibaudeau, G. K. Fortescuetrans., *Bonaparte and The Consulate*(New York:The Macmillan Company, 1908), pp.72-74.

Ⅲ. 명사들의 질서를 위한 억압

나폴레옹 체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목적의식들이 집약되어 탄생했던 집단적 기획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그 설립이념의 다양한 측면들 가운데서도 억압과 그 통제라는 주제와 관련된 부분들로는 다음을 주목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통제를 위한 제도들, 특히 위원회의 사상적 원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야기했던 99년 헌법의 내용이며, 두 번째는 고등경찰의 동원을 통해 집단적 이익을 보장받고자 했던 엘리트 계층과 나폴레옹 사이의 합의이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자연법에 근거한 판결권’은 자연법으로부터 도출된 권리들이 어떠한 정치적 합의보다도 우선시되며, 그것들을 나열한 문서가 자연법과 실정법을 이어주는 권리선언의 형태로 헌법의 전문이 됨으로써 헌실정치상의 효력을 보유한다는 전제에 근거했다. 다만 시에에스가 헌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여 저술한 것은 1789년이며, 이후 산악파 독재와 총재정부 시기의 혼란을 거치며 입장의 변화가 야기되었다는 것 또한 고려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일부 연구자들은 99년 헌법 작성 시점에서의 시에에스가 보편적 권리의 보장보다는 민중혁명의 위협을 차단할 필요에 무게를 둬으로써 권위주의자로 전향했고, 따라서 강제력의 행사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큰 선언문의 작성을 스스로 거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⁴¹⁾ 하지만 이러한 해석들은 그가 ‘선언’이라는 표현으로부터는 한걸음 물러섰을 지언정 보편성과 불가침함의 표현을 조심스럽게 가다듬은 권리의 나열들, 혹은 헌법이 근거하고 있는 원칙들이 그 전문으로서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했다는 것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입법자들에게는 준수해야 할 대원칙을 제공하고 인민에게는 보호받아야 할 권리들을 자각시키는” 인권선언의 본래 목적을 충족하면서도, 선언이라는 형식 속에 내포된 혁명의 뇌관으로서의 잠재력과 강경함을 완화하기 위한 선택이었다.⁴²⁾

41) Jainchill, *Reimagining Politics*, pp.227-229.

42) Ibid., p.228.

즉, 시간이 지나며 그 주장의 보편적이며 ‘형이상학적인’ 성격은 감소하고 보다 현실적인 고려가 증대되었을지언정, 시에예스는 여전히 헌법의 상위 원칙으로서의 권리들이 중앙 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장치 역할을 하길 원했던 것이다.

하지만 완성된 99년 헌법에는 선언은 물론 헌법이 근거하는 상위 원칙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진술도 포함되지 않았다. 보나파르트 장군은 헌법으로부터 권위 행사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을 가능한 한 제거하고자 했으며, 그를 쿠데타에 끌어들이던 장본인인 시에예스조차 군대와 일반 대중의 압도적인 지지로부터 나오는 영향력에 저항할 수 없었다.⁴³⁾ 더불어 제한위원회에 참석했던 전 혁명가들 역시 보편적이고 불가침한 권리들의 선언과 불과 몇 년 전에 경험했던 민주주의의 폭발력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려웠고, 결국 후자를 자극할 수 있는 단초를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⁴⁴⁾ 그 결과 99년의 헌법은 그 근간이 되는 대원칙의 명시적인 표현이 부재하고, 본문 일부에 체제의 설립이념이 된 정치적 합의만이 암시된 문서로서 완성되었다. 나아가 허가받지 않은 가택 수색의 거부권과 같은 특수한 권리들의 보장, 그리고 보편적인 인간이 아닌 자격을 갖춘 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표현이 일부 조항들에 삽입되었지만, 이 또한 “국가의 안녕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과 같은 문장들의 삽입을 통해 폭넓은 해석의 여지를 남김으로써 필요에 따라 정지될 수 있는 제한적 보호만을 제공하게 되었다. 새로운 헌법은 보편적, 혹은 당대의 표현을 빌리자면 ‘형이상학적’

43) 당시의 갈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뢰더러의 회고록 참조. Pierre-Louis Roederer, Forsyth Murray Greensmith trans. and ed., *The Spirit of the Revolution of 1789 and Other Writings on the Revolutionary Epoch*(London: Scolar Press, 1989), p.108; 더불어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보나파르트는 다음과 같은 발언들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헌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작업을 방해하거나, 정부가 그것을 위반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압제적이 되어야만 할 필요는 없지만, 몇몇 자의적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피할 방도는 없다.” Lefebvre, *Napoléon*, p.114.

44) Annie Jourdan, “The Napoleonic Empire in the Age of Revolutions: The Contrast of Two National Representations”, Broers ed., *The Napoleonic Empire*, p.314.

인 가치의 보장에 헌법의 비중과 체제의 역량을 할애하고자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합의를 이끌어냈던, 시에예스와 뢰더러(Pierre-Louis Roederer), 그리고 탈레랑(Charles Maurice de Talleyrand-Périgord)으로 대표되는 브뤼메르 쿠데타의 주축들은 ‘자유주의적 권위주의자’들로 지칭될 수 있는 전 혁명가이자 정치 엘리트들이었다.⁴⁵⁾ 이들은 공포정치와 총재정부 시기의 경험들, 그리고 파벌주의 자체를 좌악시하는 혁명적 수사들의 전통이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정계의 주류로 부상했으며, 각자가 매우 다양한 정치사상적 조류들 속에 위치했을지언정 강력하고 통합된 중앙의 권위를 통한 정치사회적 안정의 확보가 시급함을 인지했다는 공통점으로 묶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서도 시에예스와 그 동료였던 뢰더러는 나폴레옹 체제의 사상적이고 제도적인 특징들이 정립되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인물들이었다. 특히 후자는 10년 넘게 시에예스와 교류하며 그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혁명의 모든 정치적 단계에 걸쳐 왕성한 활동을 펼쳤던 작가이자 정치가였고, 그의 정치사상 논변들은 자유주의적 권위주의자들의 가치관을 형성했던 고민과 그들이 새로운 체제에 원했던 바가 무엇인지를 대표적으로 드러내어준다.

뢰더러가 남긴 논고들로부터 가장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원칙은 당대에 ‘자코뱅’이라 통칭되었던 민주주의적이며 평등주의적인 흐름에 대한 완강한 거부이다.⁴⁶⁾ 혁명의 성과들, 특히 사회경제적 ‘근대화’는 “능동적인 정치적 삶을 향유할 자격이 없는” 인민 대중의 적극적 주권행사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자연권으로서의 재산권의 보장에 대한 요구로 이어진다.⁴⁷⁾ 뢰더러는 토지 잉여의 시장 투입과 자본의 축적으

45) 이들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 Tulard, *Napoleon*, pp.81-82; Lefebvre, *Napoléon*, pp.53-54; Broers ed., *The Napoleonic Empire*, p.21; Jainchill, *Reimagining Politics*, pp.198-218; Lynn Hunt, *Politics, Culture, and Class in the French Revolution*(London: Methuen & Co., 1986), pp.225-226.

46) 이후 그의 이력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Roederer, *The Spirit of the Revolution*, pp.ix-xxxii.

로 요약되는 흐름이 무산자들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화국 전체의 물질적 풍요를 불러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노선임을 강조했으며, 이에 근거하여 지주들이 곡물을 비축할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로베스피에르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공격했다. 뢰더러에게 있어 재산권은 “법, 풍습(moeur), 그리고 여론의 완전하고도 통합된 힘을 통해”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야만 하는 권리였으며, 그는 이후 복고왕정시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시각에 근거한 정치 이론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켰다.⁴⁸⁾

뢰더러가 그의 회고록에서 브뤼메르 파, 혹은 “총재정부 말엽에 장기적 안목에 따라 행동했던 이들”이라고 표현한 1799년의 사람들은 정부가 동원하는 권위주의적 수단에 의존하여 재산권의 완전한 향유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기를 원했던 이들이었다.⁴⁹⁾ 그리고 그들과 나폴레옹 사이의 협의란 중앙 권력이 동원하는 강경한 조치들을 통해 “혁명을 시작했던 자유인이자 재산보유자들”들을 위한 체제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것이었다.⁵⁰⁾ 공화주의에 대한 애착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제 “환상으로부터 벗어난” 전 혁명가들은 권리선언이나 다른 형태의 ‘형이상학적’ 논변들이 유산가 시민들에게 현실적 보장을 제공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협을 가할 수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다.⁵¹⁾ 따라서 그들은 혁명의 성과들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보존할 정치적 합의를 만들어내는데 집중했으며, 그

47) Jainchill, *Reimagining Politics*, p.19; Ruth Scurr, “Social equality in Pierre-Louis Rœderer's interpretation of the modern republic, 1793”, *History of European Ideas*, vol. 26 no.2(2000), pp.107-123.

48) 특히 후자의 경우 그는 혁명의 근본 원인을 재산권을 보다 완전하게 향유하고 자본을 해방하려는 “부르주아”들의 경제적 욕구로 설명하는 분석을 제시하며 훗날의 마르크스주의 해석과 유사한 통찰을 보이고 있다. Roederer, *The Spirit of the Revolution*, pp.8-67.

49) Ibid., p.103; Pierre-Louis Roederer, *Mémoires sur la Révolution, le Consulat et l'Empire*(Paris: Plon, 1952), pp.128-129.

50) Ibid., p.14; 여기서의 자유인이란 충분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보유함으로써 일정한 정치적 자유를 향유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시민’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51) “disenchanted”는 린 헌트가 사용한 표현이다. Hunt, *Politics, Culture, and Class*, p.233.

첫걸음은 “명사(notable)”라는 개념을 헌법에 삽입함으로써 브뤼메르파가 대변하고자 했던 사회경제적 계급에 법적 실체를 부여한 것이었다.⁵²⁾

명사들은 지주와 기업가들, 행정가나 변호사 등의 전문직종인들, 그리고 재능인(talent)이라 불리었던 소수의 작가나 예술가들로 구성되었으며, 그 대다수는 국유재산과 아시아에 대한 투기, 군수물자 조달 등을 통해 부를 축적했던 중-대규모의 토지재산 보유자들이었다.⁵³⁾ 나아가 이들은 고용주와 지주, 그리고 고위 행정가로서 다양한 영역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새로운 지배계층으로 부상했으며, 그러한 사회적 위치와 재산에 기초하여 계급의식에 가까운 연대감을 굳혀나가던 중에 있던 부르주아지로 일컬어질 수 있는 이들이었다.⁵⁴⁾ 그리고 1802년의 원로원 결의는 선거에

52) “명사록(listes de notables)”이라는 이름의 명부는 정부 관료로 선출될 자격이 있는 시민들을 모아놓은 엘리트 인명사전으로서 기획되었으며, 이는 워더러와의 논의를 거쳐 구성된 시에예스의 원안이 제헌위원회 전체의 지지를 받아 큰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된 부분이었다. 유일한 변경점은 시에예스는 기초 선거의 투표권 역시 일정한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충족하는 이들에게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으나,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논쟁을 거쳐 최종안에서는 모든 성인 남성들의 보통선거로 대체되었다. 이는 최초에는 공동체에서 일정한 추천을 받은 이들이 입후보하여 보통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그 이후에는 선출된 명사들이 다음 단계의 명사록 작성에 대해 투표권을 가지는 방식을 통해 60만의 기초 명사록(liste communale), 6만의 도 명사록(liste departementale), 6천의 국가 명사록(liste nationale)으로 1/10씩 규모를 줄여나가며 작성되었다. 다만 기초 명사록의 단위가 된 지역구들이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규정을 찾을 수 없다. Jainchill, *Reimagining Politics*, p.229-230; Lefebvre, *Napoléon*, p.67.

53) 동산을 주요한 재산으로 보유하며 상업,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비율은 전체 중 약 10%로 비교적 소수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들은 지방에 따라서는 명사록의 과반수를 점유하기도 했으며, 나아가 대다수의 지주는 재산의 일정 부분을 다양한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부동산과 동산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가령 라브루스(Ernest Labrousse)의 마르세이유 지방에 대한 연구는 해당 지역의 부유층들 거의 모두가 부동산과 동산 모두를 운용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나아가 통령정부와 제1제국 당시 동산의 정확한 규모 평가가 어려웠던 것으로 말미암아 징세를 위한 통계 과정에서 관료제적 편의에 따른 누락이 발생했음을 고려한다면, 토지를 보유하면서도 전략적으로 상업과 산업에 자본을 투자했던 자산가들의 규모는 오히려 과소평가 되어왔다는 해석 역시 가능하다; Bergeron, *L'Épisode Napoléonien I*, p.152.

54) 당대에도 명사와 부르주아는 유의어로 간주되었다. Tulard, *Napoleon*, p.193; 르페브르와 베르주롱을 비롯하여 명사 집단을 마르크스주의적 부르주아

기초한 명사록 작성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이유로 각 도별 최상위 납세자 600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collège électoral)” 명부를 신설하여 약 7만 여명의 목록을 구성함으로써 그것을 대체했으며, 이는 나폴레옹 체제가 부를 사회적 위계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을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낸 변화였다.

이들이 지향했던 체제의 핵심은 출생이라는 배타적 기준이 아닌 개인의 능력과 부라는 사회경제적 내용에 근거하는 위계질서를 안정적으로 보존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구체제의 질서에 비해서는 유동적일지라도 재산과 교육으로 대표되는 여과의 장치들을 통해 일정한 폐쇄성을 갖추었다.⁵⁵⁾ 그 토대는 공평한 과세로 대표되는 법적 평등과 명사들의 사회적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국유재산의 소유권에 대한 보장이었으며, 나아가 봉건적 특권으로부터 해방된 토지와 구체제의 관습적 제약들로부터 풀려난 자본은 불가침한 재산권에 기초하여 자유로이 이용될 수 있어야만 했다.⁵⁶⁾ 그리고 민법전(Code civil)의 544조가 보여주듯이, 나폴레옹의 체제는 “개인의 재산을 향유하고 처분할 권리를 가장 절대적인 방법으로” 규정하고 보장함으로써 그 기대에 부응했고, 명사록과 선거인단 명부는 사회경제적 권력을 정치적 권력으로 전환할 기회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제공하며 체제에 금권정치적인 면모 역시 가미했다.⁵⁷⁾

계급으로서 규정했던 연구들은 그 자산의 ‘귀족적’ 성격과 자본주의 사회 발달에 기여했던 바에 의문을 표했던 수정주의자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하지만 유동 자본의 통계적 과소평가, 지역에 따른 현저한 차이, 부동산과 동산의 상보성, 부동산이 사업과 계약의 영역에서 신용의 지표로서 간주되던 당대의 경향성, 그리고 축적된 지대가 상대적 안정기마다 다시금 상업과 산업으로 투입되었던 현상을 고려한다면 명사들의 자본주의적 성격을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한 해석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터이다. 그들을 부르주아 계급으로 규정한 대표적 논의들과 수정주의에 대한 반박은 다음을 참조. Lefebvre, *Napoléon*, pp.53-60; pp.130-138; pp. 402-403; Bergeron, *L'Épisode Napoléonien I*, pp.146-168; Lyons, *Napoleon Bonaparte*, pp.162-166.

55) Lyons, *Napoleon Bonaparte*, p.67; Bergeron, *L'Épisode Napoléonien I*, p.147.

56) 나폴레옹 체제 하에서 선별적으로 보존된 혁명적 가치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Tulard, *Napoleon*, pp.161-183.

57) Lyons, *Napoleon Bonaparte*, p.96; Tulard, *Napoleon*, p.195.

하지만 새로운 질서의 정립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여전히 생생한 혁명적 ‘무정부상태’의 기억들과 결별하여 탈-정치화된 상태에 머물도록 강제하는 것이었다. 즉, 나폴레옹과 중앙 행정기구에게 주어졌던 강력한 권한들, 특히 고등 경찰의 주된 목적은 모든 정치적 행위가 명사들에게 독점적으로 개방된 한정된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도록 제어함으로써 새로운 혁명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억제하고, 지배계급으로서의 명사들이 하위계급에게 통제력을 행사하는 질서를 항구적 ‘정상 상태’로서 정착시키는 것이었다.⁵⁸⁾ 더불어 그 완전한 실현을 위해선 각 지역 별로 상이한 모습을 띠는 공동체의 유기적 관습에 따라 일상적 행위들이 조직되던, 구체제 시기로부터 이어져온 전통이 보다 균질적이며 규율 잡힌 질서로 대체되어야만 했다.⁵⁹⁾

새로운 질서의 정립은 체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권리들 사이에 우선순위를 부여했던 작업으로도 정리될 수 있다. 권리선언의 삭제가 보여주듯이 99년 헌법에 내포된 설립이념은 보편적인 권리들을 완전하고 불가침한 가치로서 완전하게 보장하고자 하지 않았다. 특히 자유권의 유의어로 간주될 수 있는 표현인 ‘개인의 자유’는 당대에도 다양한 층위의 권리들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나폴레옹 체제 하에서 여러 자유들은 상술한 ‘합의’에 따라 중요도의 위계질서를 형성했다. 그러한 질서의 성격에 대해선 당대의 가장 이름난 반체제 작가들 중 한 사람이었던 콩스탕(Benjamin Constant)의 통찰을 참고할 수 있다. 그는 제국 시기에 걸쳐 저술했던 논고에서 ‘근대 국가’의 질서를 구성하는 서로 다른 성질의 두 자유에 대하여 논했다. 그 첫 번째는 권력에 대한 능동적 참여와 의사표현으로 구성되는 공적이며 정치적인 자유이다.⁶⁰⁾ 이는 계몽주의 전통의 전범이 되었던 고대

58) Isser Woloch, *The New Regime: Transformations of the French Civic Order, 1789-1820s*(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94).

59)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Howard G. Brown, “From Organic Society to Security State: The War on Brigandage in France, 1797-1802”,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vol.69, no.4(1997).

60) 훗날 엘바 섬에서 귀환한 나폴레옹은 정치적 반대파들과의 화해를 보여주기 위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콩스탕을 국무총리로 초빙했고, 그에게 기존 체

공화국들에서 무엇보다 중시되었던 자유이며, 혁명의 초창기에 프랑스 인민에게 주어졌던 자유란 이것을 의미했다.⁶¹⁾ 두 번째는 개인적 독립성의 향유로 구성되는 자유이다. 이는 근대에 이르러 ‘상업’이 일상적 상태로 정착하고, 그것을 통한 이윤의 창출이 점점 더 국가의 유일한 목적, 보편적 경향성, 그리고 진정한 삶으로 간주되기 시작한 것에 기인했다. 상업에 기초한 근대인의 삶에서 자유란 사적인 기쁨들의 제약되지 않은 향유를 의미하며, 가장 자유로운 인간이란 그 자신의 기쁨에 가장 밀착해 있는 인물을 지칭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고대적 자유의 개념에서 한 사람이 그 공적인 존재(existence publique)를 통해 규정된다면, 근대적 자유의 개념에서 한 사람은 그의 재산(propriété)과 사실상 동일시된다. 결국 근대적 자유의 보존과 증진을 존재목적으로 삼는 근대 국가에서 인민의 정치적 주권은 거의 항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며, 극히 제한된 경우에 오직 그것을 포기한다는 의사표현을 위해서만 행사된다. 그리고 콩스탕의 결론에 따르면, 나폴레옹 체제 아래서의 프랑스는 바로 이러한 근대 국가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렇듯 콩스탕은 ‘근대적 자유’의 보장과 ‘고전적 자유’의 말소를 나폴레옹 체제의 특징으로 규정했고, 후자는 “그 동기를 설명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억압적 수단들에 의해 수시로 침해당하곤 한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근대적 자유를, 혹은 명사들이 주도하는 사회경제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 억압의 중심에는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수단인 예방적 구금이 위치했다.

제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직접 물은 뒤 제국 정부의 개혁을 일임했다. Sudhir Hazareesingh, *The Legend of Napoleon*(London: Granta Books, 2004), pp.157-164.

61) 이후 콩스탕의 논의는 다음을 참조. Benjamin Constant, Biancamaria Fontana trans. and ed., *Political Writings*(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p.102-105; pp. 114-136; pp.309-317.

IV. ‘자의적 구금’과 “원로원 자유위원회”

통령정부의 논리적 연장과도 같았던, 그리고 전술한 ‘합의’를 보다 가다듬어 완성했던 제1제국의 탄생과 함께, 프랑스에는 약 8년에 걸쳐 이어졌던 국내 질서의 안정기가 도래했다.⁶²⁾ 대규모의 체포, 처형, 그리고 추방으로 대표되는 대통령정부의 격동기가 마무리된 이후, 이제 제국의 이름을 가지게 된 나폴레옹 체제에서는 일상적 삶을 교란하는 사회적 하부의 소요와 정치적 반대파의 저항 모두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최초의 충격을 통한 질서의 회복은 경찰력 행사 주체들이 예방적 구금과 검열의 수준에서 억압적 수단들의 강도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러한 억압의 일상화는 다시금 대통령정부가 달성했던 안정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⁶³⁾ 그 사용 빈도와 당대의 인식 차원에서, 예방적 구금은 언론의 검열과 더불어 나폴레옹 체제의 고등 경찰, 혹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조치들까지 포괄하는 정치사회적 억압 전반을 대표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⁶⁴⁾

이렇듯 구체적 법적 근거 없이도 즉각 체포와 구금을 가능케 하는 명령서의 애용은 비밀성과 효율성에 대한 체제의 선호를 보여준다.⁶⁵⁾ 혐의자에

62) 제국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있었던 논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 Annie Jourdan, “Le Premier Empire, Un Nouveau Pacte Social”, *Cités* N. 20(2004), pp.51-64; Philip G. Dwyer, “Napoleon and The Foundation of The Empire”, *The Historical Journal* vol 53, issue 2(2010), pp.339-358; Boudon, *Histoire du Consulat et de l'Empire.*, pp.135-142.

63) Lyons, *Napoleon Bonaparte*, p.129.

64) 검열에 대해서는 이미 1800년 4월부터 제1통령의 명령에 의해 경찰의 사전 허가 없이는 벽보 부착, 신문, 저널이나 소책자의 판매, 연극이나 기타 무대극의 상연이 금지된 상태였다. Napoléon Bonaparte, John Eldred Howard trans. and ed., *Letters and Documents of Napoleon, Vol.1*(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1), pp.358-359; 언론 검열과 선전들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Robert B. Holtman, *Napoleonic Propaganda*,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50); Wayne Hanley, *The Genesis of Napoleonic Propaganda, 1796-1799*,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5).

65) 이후 나폴레옹 체제 하에서의 자의적 구금에 대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

대해 정식 기소를 진행하고 재판에 회부하는 과정은 여론의 이목을 끌기 마련이었고, 특히 정치적 반대파가 연루된 사건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여 정권의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는 사태는 대중의 지지를 통해 권력을 쥔 나폴레옹과 그 체제의 수혜자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적용 가능한 일반법을 찾기 어려운 ‘작은 소란’들에 대해 예방적 구금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기나긴 법해석이나 새로운 입법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상적 차원에서의 질서 유지에 엄청난 효율성을 가져다주었다. 따라서 경찰장관 푸셰와 레니에(Régnier Claude Ambroise), 사법경찰 소속의 검사와 예심판사, 그리고 행정경찰 소속의 공직자들에 이르는 여러 경찰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예방적 구금을 사실상 가장 기본적인 치안 유지책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정착했다.⁶⁶⁾

예방적 구금의 대상은 취객의 소란에서부터 정치적 반대파의 테러 모의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범주의 질서로부터의 이탈들을 포괄했다. 그리고 경찰과 자유위원회, 추밀참사회 문서들에서는 그 대상을 다음의 다섯 범주로 관습적으로 구분했고, 이는 피구금인들에 대한 정식 통계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1809년의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사용되었다.⁶⁷⁾ 그 첫 번째는 “국가 교도소 수감자들(prisonniers d'etat)”이었으며, 이들은 정치범으로 규정될 수 있는 이들이었다. 그리고 1811년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범주에는 혁명적 혹은 반혁명적 음모를 모의한 것으로 고발된 자, 영국의 첩자, 스페인 반란군, 전 방데 반란군, 전 올빼미 당원, 정부에 대하여 공격적 행위를 시도한 자, 기타의 정치적 음모를 꾸민 자, 그리고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감형되어 구금 중인 자들이 속해 있었다.⁶⁸⁾ 그 체포는 단순한 혐의만으로 이루어

Woloch, *Napoleon and His Collaborators*, pp.186-191.

66) 푸셰는 1800년에서 1802년까지와 1804년에서 1810년까지, 레니에는 1802년에서 1804년까지 경찰장관직을 맡았다. 푸셰 이후 신임 장관이 된 것은 사바리 장군이였다. Lefebvre, *Napoléon*, pp.75-76; Woloch, *Napoleon and His Collaborators*, pp.187-189.

67) Woloch, *Napoleon and His Collaborators*, p.191.

68) 정부에 대한 공격에는 연설이나 책자 출간을 통한 선동 행위가 주로 해당되었다. 가령 1806년 『정교협약에 반대하는 주교들의 선언(*La réclamation des évêques contre le Concordat*)』이라는 책자를 출간했던 파리의 변호사 룰라

어진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정부와 나폴레옹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이나 낙서를 한 자,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출판물을 배포한 이들이 다수를 이루었다. 가령 시골의 대장장이였던 포르탱(Fortin)은 술에 취해 “보나파르트는 단두대에 보내버려야 마땅하다”라고 소리쳤다가 곧바로 투옥되어 이웃들의 노력 끝에야 석방될 수 있었으며, 이세르(Isère) 도의 한 카페에선 “나폴레옹은 찬탈자이며 폭군이다”라는 이야기를 주고받던 두 젊은이가 음모 혐의로 체포되어 몇 개월 동안 갇혀있어야만 했다.⁶⁹⁾ 두 번째는 “불온성직자들(*prêtres séditeux*)”이었고, 이들은 주로 설교 자리나 책자 출간을 통해 반정부적 견해를 밝혔던 사제들이었다. 세 번째는 “품행불량자들(*gens vicieux*)”이라 지칭되었고, 네 번째는 정식 재판에서 배심원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사회적 이익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을 고등 경찰의 방법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격리할 것이 요구되는” 이들이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부랑자들(*vagabonds*)이나 여타의 불량신민들(*mauvais sujets*)”로 걸인이나 광인들이 여기에 속했다.

상술한 다섯 범주 가운데 품행불량자들과 부랑자들의 사례는 예방적 구금이 명사들의 사회경제적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다양한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장의 자유방임이 경제 정책의 기본이 되고 노동조합의 해체를 유지한다는 1802년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 관습적 규칙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찰이 고용주의 편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풍경은 지극히 일반적이 되었다.⁷⁰⁾ 가령 지대 계약, 임

크(Roulhac)는 선동교사 혐의로 체포되어 16달 동안 구금되어야만 했다. *Commission de la Liberté Individuelle(1802-1814) Inventaire des Articles O^o 1430 à 1436 et CC 60 à 63*(Paris: Archives Nationales, 1989), p.24.

69) Woloch, *Napoleon and His Collaborators*, pp.188; 마이클 시발리스는 나폴레옹 체제 하에서 후술할 범주들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정치범으로 간주될 수 있는 피구금인들이 항시 200명에서 300명 가량이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Sibalis, “Political Prisoners and State Prisons”, Dwyer and Forrest ed., *Napoleon and His Empire*, pp. 100-101.

70) 나폴레옹 체제서의 시장 자유방임 원칙을 잘 보여주는 일화로, 특히 회사에 설립에 대한 1802년의 논쟁에서 참사회 전반의 지지를 받아 제1통령이 내린 결정

금분쟁이나 노동 시간과 관련된 갈등은 민사재판으로 회부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지방 행정가들은 그러한 절차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는 판단에 따라 계약을 위반한 노동자들을 구금하는 것으로 규율을 강제하곤 했으며, 이는 그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된 파업에 대한 대처에도 적용되었다. 나아가 1803년에는 노동자의 신분증명서라고 할 수 있는 노동수첩(livret)이 도입되었다. 이는 노동자들의 이직을 통제하기 위한 구체제의 수단을 계승하고 합리화한 것이었으며, 이를 지참하지 않고 함부로 여행하는 행위는 구금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렇듯 일상적 규율을 강제하기 위한 투옥의 기간은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 사이인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운이 나쁜 경우에는 위원회로 청원이 접수될 정도로 연장되기도 했으며, 이는 낭비되는 노동력으로 간주되던 걸인과 부랑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⁷¹⁾

을 언급할 수 있다. “처음에는 저 또한 특히 회사를 설립하는 편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모든 항구의 상인들과 소통하면서, 저는 그들 모두가 교역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자신들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했고, 폐쇄적인 조합 측의 주장을 충실하게 반박했습니다. (...) 가장 넓은 시야와 긴 경험을 가진 현명한 이들은 만약 인민이 그들 자신의 이익을 쫓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들은 결국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증진하는 방향을 택하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혁명 이전에 이미 널리 퍼져 있었지만 프랑스의 정부는 그 계획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Thibaudeau, *Bonaparte and The Consulate*, pp.205-207; 이와 유사한 다른 사례로 제국 초기 국가참사회에서 나온 광산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와 기업에 대한 규제 건의에 대해 황제가 내린 결정을 들 수 있다. “그러한 문제는 기술자들에 의한 감시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사적인 이익에 의해 관리되도록 놔두는 편이 좋습니다. (...) 모든 입법은 재산 보유자들에게 유리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재산 보유자는 그 재산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사업을 포기할 것입니다. 재산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는 어떠한 것이라도 시민을 괴롭힐 터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반드시 막대한 행동의 자유가 주어져야 합니다.” Napoléon Bonaparte, Christopher Herold J. trans. and ed., *The Mind of Napoleon: A Selection of His Written and Spoken Words*(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5), p.98.

71) 가령 노동수첩을 지참하지 않고 여행한 이유로 구금된 소모공(cardeur de laine) 마종(Louis Masson)과 직업 없이 배회한 혐의로 넉 달 동안 구금된 이후, 벽돌공으로 고용되었다는 증명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석방된 바르비에(Jean-Claude Barbier)가 청원을 접수했던 사례를 들 수 있다. *Inventaire des*

이어서 비적 활동이나 절도의 이력이 있는 자들은 무죄를 선고받거나 과거에 처벌을 받은 이후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검사나 예심판사의 판단에 따라 계속해서 구금된 경우가 빈번했다. 대공포 시기의 기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던 그러한 종류의 범죄는 재산권을 침해하고 상업과 유통을 저해하는 질 나쁜 일탈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⁷²⁾ 나아가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진 않을지라도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리라 간주된 이들 역시 빈번하게 구금되었는데, 가령 구체제 봉인장과 마찬가지로 가족이나 공동체의 요청에 따라 품행 교정 목적으로 투옥된 젊은이들이나 문란한 행실로 고발당한 여성들이 여기에 해당되었다. 나폴레옹 체제는 명사들의 편에서 반체제 인사들과 하위계급 전반에 대한 강력한 인적 통제를 수행했던 것이다.⁷³⁾

구금에는 규칙적인 절차가 부재했다. 주로 경찰장관이나 법무장관의 이름으로 발행되어 미리 준비된 명령서를 통해, 혹은 영장 없이 실무자의 즉각적 판단으로 체포된 이들은 대부분의 경우 자신들이 어째서 투옥된 것인지도 알지 못한 채 짧게는 며칠에서 몇 주, 길게는 수년에서 나폴레옹 체제의 종식에 이르기까지 기약 없이 갇혀 있어야만 했다. 이는 분명 처형에 비해서는 낮은 강도의 억압이었지만, 구금 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 사태는 일반 시민들에게 파멸적인 여파를 가져오기에는 충분했다. 나아가 장기간 투옥되었던 이들의 회고록은 감옥의 좋지 않은 환경으로 인한 건강의 악화와 석방일 조차 알지 못한 채 길어져만 가는 투옥이 가져온 절망, 그로 인하여 피폐해지는 정신과 광증이 유발되었던 사례들을 전하고 있다.⁷⁴⁾ 이러한 상황을 봉인장과 혐의자법으로 대표되는 강렬한 역사적 기억

Articles O² 1430 à 1436, pp.45-46.

72) 가령 비적 혐의로 체포된 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석방되지 못했던 트뤼셰(Michel Truchet)와 라크루아(Georges Lacroix)의 사례를 들 수 있다. *Inventaire des Articles O² 1430 à 1436*, p.25; p.28.

73) Lefebvre, *Napoléon*, p.403.

74) Antoine-François Ève, *Tableau Historique des Prisons D'État en France sous le Règne de Buonaparte*(Paris: Libraires du Palais-Royal, 1814).

들에 빗대기란 쉬운 일이었으며, 이는 나폴레옹에 비판적이었던 당대의 작가들과 후대의 학자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수사가 되었다.⁷⁵⁾

예방적 구금을 통제할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먼저 제안한 측은 원로원이었다. 당대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서 권위주의적 수단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는 여론이 조성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전제주의로의 회귀를 원한 것은 아니었으며, 권위주의적 조치의 적극적 지지자들 역시 통령정부 시기 억압의 과도함이 완화되어야만 한다는 비판에는 동의를 표했다. 나아가 상당수의 전혁명가들은 분할과 균형을 통한 권력의 제어라는 원칙과 완전히 결별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입헌군주제를 표방한 제1제국에서의 억압이 법적인 틀 안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원로원은 제국으로의 이행 직전에 제1통령에게 보냈던 합동 요구서에서 억압의 ‘예외적’ 자의성을 통제하기 위해 각각 “자유위원회”와 “언론자유위원회(Commission sénatoriale de la liberté de la presse)”로 명명된 두 조직의 설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특히 95년의 헌법재판소 이론이 당대에 이르기까지 정부 행위의 합헌성을 전담하여 다루는 기구에 대한 유일한 이론이자 원로원의 근간이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해당 이론에서 사용된 어휘들을 빌려 그 역할과 의의를 설명했던 자유위원회는 시에에스의 논의로부터 직접적인 영감을 얻어 탄생했다고 간주될 수 있는 기구였다. 그리고 제 1통령은 제시된 요구사항들이 영국식의 의회주의와 행정부의 약화를 지향하는 의도를 품고 있다고 판단하며 크게 분노했다고 전해진다.⁷⁶⁾ 하지만 나폴레옹 역시 억압적 수단들에 대한 여론의 동향을 민감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온건한 요구였던 두 위원회의 설치만은 논쟁 끝

75) Benjamin Constant, Biancamaria Fontana trans. and ed., *Political Writings*(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130.

76) 해당 요구서는 두 위원회의 설치 외에도 원로원 직의 세습이 가능하게 할 것, 법안의 발의가 가능토록 할 것, 원로원 결의의 해석에 있어서 국가참사회의 개입을 배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Le bon Pelet, *Opinions de Napoléon: Sur Divers Sujets de Politique de d'Administration, Recueillies par un Membre de Son Conseil d'Etat et Récit de Quelques Évènements de l'Époque*(Paris: Firmin Didot Frères, 1833), pp.61-64.

에 허가될 수 있었으며, 이는 제국으로의 이행을 선포했던 혁명력 12년 플로레알 28일 원로원 결의의 61-63조를 통해 설립되었다.⁷⁷⁾

원로원에 속한 내부조직이었던 자유위원회는 자체 선출한 7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초대 구성원은 1806년까지 위원장을 맡은 르누아르-라로슈(Lenoir-Laroche Jean-Jacques), 서기인 브와시 당글레(Boissy D'Agas Francois-Antoine), 에메리(Emmery Jean-Louis-Claude), 2대 위원장 아브리알(Abrial Andre-Joseph), 비마르(Vimar Theodore Vernier Nicolas), 그리고 세르(Sers Jean-Pierre)로 이루어졌다. 이들 모두는 혁명의 시작을 함께했던 자유주의적이며 입헌주의적인 성향의 온건파이고, 권위주의적 수단들의 필요와 브뤼메르 쿠데타의 명분을 받아들였을지언정 보나파르트의 확고한 지지자는 아니라는 공통점으로 묶일 수 있는 이들이었다.⁷⁸⁾ 가령 95년 헌법의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나폴레옹 체제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입법부의 자율성과 언론의 자유를 옹호했던 브와시 당글레, 제1통령과 여러 차례 반목을 빚었던 아브리알, 제국 체제의 현실에 비판적인 입장을 표한 뒤 은퇴하여 저술활동에 매진했던 베르니에 등은 황제로부터 상당히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인물들이었다.⁷⁹⁾ 나아가 공포정치시기에 혐의자로 몰려 투옥되었던 에메리와 비마르, 그리고 체포를 피해 피신했던 베르니에는 예방적 구금이라는 수단에 내재된 위험성에 경각심을 품기에 충분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⁸⁰⁾ 마지막으로 자유위원회는 매 4개월 마다 구성원을 교체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재선이 가능했고, 따라서

77) 언론자유위원회는 자유위원회와 달리 어떠한 기록된 성과도 남기지 못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 Thiry, *Les Attributions du Sénat*, pp.45-47.

78) Thiry, *Les Attributions du Sénat*, p.29.

79) 원로원이 보여주었던 독립성과 나폴레옹과의 대립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François Pietri, *Napoléon et le Parlement ou la dictature enchaînée*(Paris: Fayard, 1955), pp.192-197.

80) 각 인물들의 이력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 Azimi, *Les Premiers Sénateurs Français*, 아브리알 p.191; 브와시 당글레 pp.199-200; 에메리 p.223; 라로슈 pp.243-244; 세르 p.257, 베르니에 pp.262-263, 비마르 p.265.

대부분의 위원들은 최소 몇 년간 자리를 지켰다.⁸¹⁾

이들의 활동은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제국의 헌법으로 그대로 이어졌던 1799년 헌법의 46조에 근거하고 있었다: “만약 정부가 국가에 반하는 음모가 모의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한다면, 정부는 그 주동자나 공범인 혐의를 받는 자들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명령을 발행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체포 이후 열흘 안으로 그들이 석방되거나 재판에 회부되지 아니한다면, 해당 명령의 책임자인 장관은 자의적 구금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⁸²⁾ 이는 국가의 안녕을 위한 고등 경찰로서의 예방적 구금을 규정하는 항목이었으며, 구금 기한의 상한선 설정은 99년의 헌법 곳곳에 삽입된 특정한 권리의 보장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다. 그리고 체포 후 열흘이 지난 후에도 후속조치 없이 구금된 이들은 직접, 혹은 가족이나 변호사 등의 대리인들을 통해 자유 위원회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었다. 서신을 보낸 이들은 자신들의 구금이 절차상의 오류, 경찰의 잘못된 판단, 혹은 개인적 원한에 의한 보복이라 항변하고, 빠른 시일 내에 무고함이 밝혀지길 바라며 “자유 수호자”인 의원들의 정의감에 호소하곤 했다.⁸³⁾

초대 자유위원회는 모든 개별 청원들을 검토하며 구제의 기준과 절차를 확립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가장 먼저 청원들 가운데 자신들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들을 분류해냈다.⁸⁴⁾ 우선 범죄 혐의로 체포되거나 추방 대기 중인 외국인의 청원은 제외되었으며, 현재 재판 중에 있거나 개인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 아닌 일반 청원에 속하는 요구 역시 관할이 아닌 것으로 간주

81) 초대 구성원 이후의 구성원으로는 르메르시에(Lemercier Louis-Niclas), 카콜(Cacault Jean-Baptiste-Camille), 주르뇌-오베르(Journu-Aubert Bernard), 구비옹(Gouvion ouis-Jean-Baptiste), 콜상(Colchen Jean-Victor), 르제스(Lejeas Martin), 파스토레(Pastoret Claude-Emmanuel-Joseph-Pierre), 그리고 반 데당(Dedem Frederic-Gilbert Van)이 있다. 이 가운데 르메르시에에는 3대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들의 보다 자세한 이력은 다음을 참조. Ibid., pp.195-270.

82) Constitution du 22 frimaire an VIII.

83) Sibalís, “Arbitrary Detention”, Brown and Miller ed., *Taking Liberties*, p.170.

84) Ibid., pp.171-172; Aulard, *Études et Leçons*, pp.295-296; Woloch, *Napoleon and His Collaborators*, p.193.

되었다. 나아가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권리의 침해가 아닌 선고된 처벌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는 경우 역시 위원회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렇게 최초의 분류가 이루어진 이후, 자유위원회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청원들에 대해서는 사건 당사자나 명령서를 발행한 주체에게 서신을 보내 답변을 요구했고, 체포의 동기가 미심쩍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곧바로 피구금인을 석방하거나 정식 재판으로 소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세 번의 요청 이후에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명령 발행의 최고 책임자인 장관이 피구금인의 석방이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공하지도 못했을 시, 자유위원회는 원로원 회의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할 수 있었다: “(피구금인)은 자의적으로 구금되었으리라고 강하게 추정되는 바이다.”⁸⁵⁾ 그리고 그러한 선언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장관은 고위공직자의 탄핵을 위해 소집되는 비상임 기구인 제국 고등법원(haute cour imperiale)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만 했다.

자유위원회가 보여준 최초의 성과는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첫 4달간의 활동 이후, 위원장 르누아르-라로슈는 혁명력 13년 방데미에르 30일의 원로원 연설에서 총 116건의 개별, 혹은 집단 청원을 받아 44건의 석방을 이끌어내었음을 공표했다.⁸⁶⁾ 나머지 17건은 관할 밖인 것으로 판단되었고, 33건은 장관에 의해 납득 가능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21건은 새로운 정보가 도착할 때까지 결정이 유보되었다. 이어서 그는 위원회의 설립 의의를 헌법에 근거하여 인민을 보호하는 자유의 파수병이자, “국가의 최고가치인 질서와 개인의 최고가치인 자유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조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연설을 마쳤다.

하지만 지금껏 다수의 연구자들이 평가해온 바와 같이, 첫 회기 이후 1814년에 이르기까지 자유위원회가 보여준 성적은 다소 실망스러운 수준이

85) Lenoir-Laroche, *Rapport Fait au Sénat dans Sa Séance du 30 Vendémiaire an XIII au Nom de la Commission Senatoriale de la Liberté Individuelle*(1805), p.5.

86) 이후의 설명은 다음을 참조. Ibid., pp.9-11.

었다. 거의 모든 경우, 의원들은 피구금인의 격리가 국가의 안보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장관들의 애매모호한 답변에 반발하지 못했고, 세 번의 요청 이후에도 후속 조치가 없을 시 장관을 제국 고등법원에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단 한 차례도 행사되지 못했다. 더불어 피구금인을 가두길 원했던 가족들의 개인적 요청으로 석방이 무산되었던 경우들 역시 찾아볼 수 있으며, 모로 장군의 반란과 같이 중대한 음모에 연루된 혐의를 받은 정치범의 경우에는 황제가 직접 개입하여 석방을 막기도 했다.⁸⁷⁾ 나아가 1810년에 추밀참사회의 감찰 제도가 신설된 이후에는 원로원이 참사회를 주재하는 황제가 직접 내린 결정에 반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⁸⁸⁾

구금 년도	청원의 수	석방된 수
1800-1802	3	1
1804	96	38
1805	68	16
1806	58	8
1807	59	14
1808	39	12
1809	42	13
1810	32	4
1811	30	1
1812	41	12
1813-1814	37	3
표기 없음	16	0
총합	527	122

(표1) 자유위원회의 활동 이력⁸⁹⁾⁹⁰⁾

87) 각각의 사례들은 다음을 참조. *Inventaire des Articles O² 1430 à 1436*, p.39; p.44.

88) 황제가 직접 구금의 연장을 지시한 사례로는 뒤피(Dupy)와 오프레(Offray)의 사건들을 참조. *Ibid.*, p.22; p.24.

89) 자유위원회의 활동 이력과 성과에 대한 통계는 몇몇 사건들의 누락과 목록 작성 과정에서 개별 청원과 집단 청원을 일관되게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이후 추밀참사회에서의 감찰과 중복된 사건들로 말미암아 당시의 자체평가와 이를 다룬 학자들이 각각 제시한 수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위축의 원인은 나폴레옹 체제의 설립이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99년의 헌법은 어떠한 상위의 원칙으로도 소급하지 않은 채 본문에서 규정된 권력의 형태와 권위 자체를 본질로 두었으며, 이는 특수한 정치적 합의의 결과물이었다. 헌법 자체는 기술적이며 수정 가능한 규범들의 나열이며, 영속적인 가치와 목적의 진술이 본문에 앞서는 선언으로 배치되어야 한다는 시에예스의 이론 가운데 앞의 절반만이 보존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자유위원회의 권위는 대원칙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들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없었고, 이들의 활동은 어디까지나 헌법상의 규정, 혹은 99년에 이루어졌던 정치적 합의의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했다. 그리고 콩스탕의 통찰의 보여주듯 나폴레옹 체제는 개인에게 속한 것으로 여겨지는 여러 자유들, 혹은 자유권들 가운데 정치적으로 공적인 의사표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집회와 표현의 권리 등을 보호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했고, 나아가 거주 이전과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행위의 권리들 역시 명사들의 질서로부터 이탈하기 위해 행사되지 못하도록, 또는 간접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한을 부여했다. 반대급부로 보호된 것은 사적이고 탈-정치화된 자유들이었으며, 그 중심에는 재산에 대한 소유를 완전하게 보장받고 그것을 원하는 대로 향유할 권리가 위치했다. 즉, 나폴레옹 체제 하에서 강력한 인적 통제와 폭넓은 물적 자유는, 그리고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연결되는 행위들의 억압과 사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비정치적 행위들의 보장은 대비를 이루었다. 따라서 합의의 내용이 보

본고에서는 그 전반적 추이를 살펴보는 목적으로 1848년에 국립문서고에서 출간된 자유위원회 활동내역문서 O²1430-1436에 기초하여 표를 작성했다. 구금년도에 따른 청원의 수는 해당 문서에서 개별 사건으로 구분된 항목의 수에 기초했으며, 청원의 결과가 문서에 “석방됨(mis en liberté)”, 혹은 “감시 하에 고향으로 돌려보내짐(renvoyé sous surveillance à son pays natal)”이라고 표기된 경우만을 성과로서 합산하고, 조사 결과 “자의적으로 구금됨(emprisonné arbitrairement)”이라 선언된 것만으로 그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다. Ibid.

90) 다만 해당 문서에 포함된 사례들 가운데 일부는 자유위원회로도 청원이 접수되었으나 석방 자체는 추밀참사회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까지도 별도의 구분 없이 “석방됨”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으로 말미암아 독립적으로 얻어낸 성과는 더욱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

편적 권리들보다 그 역제를 통해 달성되는 목표들을 우선시 할 때, 혹은 유산가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초법적 수단들을 동원하여 공적인 자유를 억압할 때, 자유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자연법에 근거한 판결권’과 헌법 이론이라는, 그 사상적 전제로부터 분리되어 명시적 기능만을 계승했던 자유위원회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지 않는 합의에 기초하여 개인의 자유를 수호해야만 하는 역설에 처한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나폴레옹 역시 유산가 집단이 자신의 주된 정치적 기반임을, 그리고 억압의 유지와 강화 역시 명사들이 정치, 사회, 경제적 이익을 독점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자각하고 있었다.⁹¹⁾ 그리고 억압이라는 수단과 명사들의 질서라는 목표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는 이상, 명사들은 정치적 자유와 권력의 분립, 자의성의 방지를 원칙으로 삼는 공화국의 ‘낡은’ 논리로부터 이탈을 요구하거나 최소한 침묵을 통해 용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⁹²⁾ 이러한 당대의 분위기는 경찰장관 푸제가 황제에게

91) 특히 1802년 6월 국유재산 매입자에 대한 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자 제1통령은 직접 토지 보유자들에게 어떠한 권리의 침해도 없을 것임을 발표하여 여론을 안심시켰고, 1803년 2월에는 토지의 원 보유자인 망명귀족들이 귀환하더라도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제공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함으로써 결정적인 신뢰를 얻었다. 1802년에 모니외르지에 게재된 제1통령의 글은 다음과 같았다. “공화국의 제일가는 의무, 그리고 정부 정책의 핵심은 언제나 국유 재산을 구입한 이들이 어떠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일 터입니다. 구입자들은 공화국과 운명을 함께 했으며, 유럽의 연합한 군대가 공화국을 공격할 때 그들의 전 재산에 걸린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국가의 안녕을 누릴 자격이 있는 이들 가운데서도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이들이고, 그들의 이익은 언제나 정부와 국가에 의해 지지될 것입니다.” Thibaudeau, *Bonaparte and The Consulate*, p.202.

92) Brown, *Ending the French Revolution*, p.330-331; 훗날 나폴레옹의 회고에 따르면, 원로원 의원들 가운데는 그러한 조치들에 강경한 반대 의사나 완전한 거부를 표하기 위해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던 이들이 있었으나, 결국에는 본고에서 다루었던 합의의 논변, 그리고 사안의 긴급함과 필수성에 설득되었다. 물론 이러한 설명은 나폴레옹 개인의 입장에서 많은 정당화가 이루어졌으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The Count de Las Cases, *Memorial de Sainte Helene: Journal of The Private Life and Conversations of The Emperor Napoleon at Saint Helena*(Lexington, K., Printed by Thomas Smith, 1823), p.154; 제국 입법부의 무력화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Boudon,

보냈던 보고서를 통해서 정리될 수 있다.⁹³⁾ 해당 서신에서, 푸세는 정치사회적 안정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음에도 여전히 불만을 표하는 세력이 남아 있음을 알리며, 그들을 지식인들(*les hommes de lettres en general*), 상당수의 파리 부르주아들(*une portion assez remarquable des bourgeois de Paris*), 그리고 부르봉 가문의 충신들(*les fideles de la maison des borbons*)이라는 세 범주로 분류했다. 이어서 그는 정부의 자의성을 규탄하는 지식인들과 현 정부의 정통성을 문제 삼는 왕당파와는 달리, 파리의 부르주아들은 체제 자체를 비판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공채 발행과 관련된 일련의 정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불평할지언정 현 정부가 보장하고 있는 질서에는 지지를 보낸다는 것이다.⁹⁴⁾ 즉, 나폴레옹 체제를 탄생시킨 합의는 사회경제적 자유라는 가치의 보존을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하고 있었고, 이후 체제의 행보와 자유위원회의 위축은 그 달성을 위해 권력의 제한과 정치적 자유로 대표되는 공화국의 이상을 포기해나갔던 과정으로 정리될 수 있다.

하지만 자유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체제의 설립이념에 동의하거나 적극적 반대를 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접수된 사건들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방기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표1)이 보여주듯이, 자유위원회의 성과는 국가교도소가 설립되는 1810년 이전까지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었고, 그들은 어떠한 법 해석을 통해서도 정당화가 어려워 보이는 자유권의

Histoire du Consulat et de l'Empire, pp.330-334.

93) Joseph Fouché, *Rapports et proclamations du Ministre de la police générale(1799-1810)*(Paris: Zanzibar, 1998), pp.83-85.

94) 당대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서 발견 가능한, 권위주의적 억압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이들의 논변은 한 국가가 얼마나 공화주의적인지의 여부는 정부의 형태가 아닌 그것이 장려하는 미덕과 공공의 번영을 통해 결정된다는 퇴더리의 논의를 통해서 더욱 잘 드러난다. 그는 93년의 리세 강의에서 정치란 상업에 종속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당대의 프랑스와 잘 맞지 않는 고대 공화국을 모범으로 삼아 “이익의 추구”라는 미덕을 부정하는 논리가 시대착오적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그는 중국의 사례를 중요하게 언급했는데, 중국의 번영한 제국들은 계몽주의의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공화국’의 형태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그 긍정적인 특징들을 모두 보유했다는 것이다. Jainchill, *Reimagining Politics*, pp.206-211.

침해에 대해선 몇 년에 걸친 노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가령 위원회는 황제 암살 음모에 연루된 혐의를 받은 출판업자 졸랑(Joland)의 체포가 증거를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1807년부터 3년에 걸쳐 그 석방을 요구했다.⁹⁵⁾ 더불어 그들이 경찰과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례로는 1806년에 있었던 라살(Lasalle)의 사건을 들 수 있다. 근위대에 물품을 공급하는 상인이었던 그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당한 뒤에 소책자를 발행하여 총 책임자인 사바리(Savary Anne Jean Marie René) 장군을 규탄했다. 이에 분노한 장군은 곧바로 그를 투옥했고, 이 사건이 명백하게 자의적 구금이라고 판단했던 자유위원회는 황제가 직접 개입할 때까지 이어진 대립 끝에 상인을 석방하는데 성공했다.⁹⁶⁾

정리하자면, 자유위원회는 최소한 체포 명령서를 발행하는 주체들이 불가피하게 고려해야 하는 변수가 되는 것에는 성공했다.⁹⁷⁾ 경찰은 위원회에 제시할 구금의 법적 근거를 항상 준비해 두어야만 했고, 이는 비록 형식적인 것이었다 할지라도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억압적 행위의 필수적인 절차 중 일부가 되었음을 의미했다. 따라서 위원회가 “어느 한 명도 자의적으로 구금되었다고 선언하지 못했다”고 평했던 과거의 혁명사학자들이나, 약간의 성공을 거두었을지언정 조직 전체가 의욕이 결여된 걸치레일 따름이었다는 최근의 박한 평가는 다소 부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⁹⁸⁾

95) *Inventaire des Articles O² 1430 à 1436*, p.49; 그리고 자유위원회는 1809년에 이르러 이듬해에 그를 석방하겠다는 답변을 받는 데 성공했으나 추밀참사회의 설립으로 말미암아 최종 승인을 내린 것은 그들이 되었다. Woloch, *Napoleon and His Collaborators*, p.196.

96) Sibalis, “Arbitrary Detention”, Brown and Miller ed., *Taking Liberties*, p.173; *Inventaire des Articles O² 1430 à 1436*, p.28.

97) 유사한 평가를 내린 연구자로는 최근의 저서들 가운데 자유위원회에 긍정적 평가를 내린 사실상 유일한 경우인 월로치가 있다. Woloch, *Napoleon and His Collaborators*, p.204.

98) 전자에 해당하는 부정적 평가는 다음을 참조. Aulard, *Études et Leçons*, p.297; Godechot, *Les Institutions de la France*, p.543; Thiry, *Les Attributions du Sénat*, pp.13-16; 후자에 해당하는 보다 최근의 연구는 나폴레옹 체제가 경찰국가임을 부정하기 힘들다는 주장을 제기했던 시발리스의 연구를 참조. Michael Sibalis, “Prisoners by Measure de Haute Police Under Napoleon I: Reviving the Lettres de Cachet”, *Proceedings of The*

하지만 그 활동은 1810년의 국가교도소 탄생과 함께 예방적 구금이 법적으로 정식화되면서 결정적으로 위축되었다.

Annual Meeting of The Western Society for French History,
vol.18(1991), pp.261-269.

V. “국가교도소”의 설립과 “추밀참사회”의 감찰

제국의 고등 경찰을 둘러싼 논란들은 프랑스가 더 많은 영토를 병합함에 따라 점점 더 가시화되었다. 적대적 주민들로 가득한 정복지와 거둬진 징병으로 불만이 누적되어 가던 국내에 질서를 강제하는 과정에서 예방적 구금은 더욱 빈번하게 사용되었고, 이로 말미암은 여론의 동요는 황제의 우려를 자아내는 수준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리고 1809년 4월에 이르러, 나폴레옹은 혼란을 정리하고 고등 경찰을 통해 구금된 이들, 특히 정치적 혐의자들의 처우를 논하기 위해 비상임 고위 회의체인 추밀참사회를 소집했다.⁹⁹⁾ 이 회의에서 법무장관은 상술한 다섯 범주에 따라 죄수들의 목록을 보고했고, 여기에는 정치범 172명, 선동사제 27명, 품행불량자 152명, 부랑자와 걸인 27명, 그리고 배심원단이 무죄를 선고했으나 계속해서 구금된 자 97명이 집계되었다.¹⁰⁰⁾ 황제는 마지막 세 범주에 대해선 각 도지사들과 검사들에게 추가적 정보 수집과 감찰을 명했고, 첫 두 범주에 대해서는 직접 검토하기를 원했다. 이후 두 번의 회의를 거쳐 총 253건의 사례가 논의된 끝에 67명이 석방되었으며, 이는 1810년 이후 추밀참사회에 위임될 국가교도소 감찰 제도의 시범운영과도 같았다.

1810년 3월 3일, 나폴레옹의 주도로 공표된 국가교도소의 설립에 대한 법령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규정된 투옥 이후의 절차 없이 사용되어 온 예방적 구금을 정식화하기 위함이었다.¹⁰¹⁾ 법령은 “재판을 받지도, 석방되지도

99) 이하 국가교도소의 설립 과정에서 있었던 논쟁들은 다음을 참조. Jean-Guillaume Locré, Bourdon Jean ed., *Napoléon au Conseil d'État: Notes et Procès-Verbaux Inédits de Jean-Guillaume Locré, Secrétaire Général du Consil d'État*(Paris: Éditions Berger-Levrault, 1963), pp.78-82.

100) Woloch, *Napoleon and His Collaborators*, p.198; 해당 통계는 이듬해부터 이루어진 정식 감찰의 수치와 비교해볼 때 전체의 일부만을 다루었거나 실제 규모에 비해 대폭 축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01) 국가교도소, 혹은 국가 감옥으로도 번역되는 ‘Prison d'État’라는 이름은 구 체제 당시의 명명이었던 것으로 말미암아 논의 과정에서 황제의 우려를 자아내 기도 했으나 결국 변경 없이 사용되었다; 이하 법령의 내용은 다음을 참조.

얇은 채 국가교도소들에 수감된 우리의 몇몇 국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들은 “서로 다른 시기에 국가의 안정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들이 “개인적인 동기와 열정이 아닌 적법한 이유로 수감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정의이므로” 그 구금과 석방의 절차가 새로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¹⁰²⁾ 이어지는 규정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모든 개인은 추밀참사회가 승인한 체포 명령 없이는 국가교도소에 구금되지 아니하며, 체포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고는 1년 이상 수감될 수 없다. 이를 위해 매년 12월 중에 정부의 수반(le chef du gouvernement)과 추밀참사들, 법무장관, 그리고 파기원(tribunal de cassation) 소속의 고관 두 명으로 구성된 사면을 위한 추밀참사회가 소집되어 국가교도소의 모든 수감자들의 정보를 기록한 명부를 검토한다. 회의는 1월 1일 이전까지 완료되어 그 결과는 국무장관(le ministre secretaire d’État)와 법무장관의 인가를 받은 뒤 경찰장관과 각 관할지역의 검사장(procureur general)들에게 발송되며, 이후 각각의 수감자들에게 그 처분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통지된다.

더불어 법령은 매년 법무장관에 의해 지명된 국가참사(conseillers d’État)들이 파견되어 직접 국가교도소들을 감찰하는 절차 역시 명시했다. 이들은 매년 9월 1일 이전에 각 형무소들을 방문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일부 수감자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추밀참사회의 승인 없이 구금된 이들의 석방을 요청한 뒤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감찰제도는 매년 2월 15일 이전에 실행되는 추가 방문으로 강화되었는데, 이는 관할 지역의 검사장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검사들에 의해 실행되며, 역시 추밀참사회의 승인 없이 구금

“Bulletin des Lois N.271. Décret Impérial Concernant les Prisons d’État”, *Bulletin des Lois de L’Empire Français 4. Séries. Tome Douzième*(1810).

102) 해당 포고문에서 구체적으로 나열된 구금의 대상들은 국가의 안정에 반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 혁명 시기에 비적 지도자로 활동했던 전력이 있는 자, 마차강도나 상습범 등 그 석방이 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자, 외국의 경찰에 의해 고용된 자, 제국에 합병된 국가 출신으로서 그 범죄가 정치적이거나 합병 이전에 자행된 것으로 말미암아 현재 재판에 회부될 수 없는 자들이다. Ibid., p.173.

이 연장된 수감자들은 석방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리고 법령의 공표와 동시에 이탈리아 아펜니노(Appennins)의 콤피아노(Compiano), 포(Po)의 페네스트렐르(Fenestrelle), 프랑스 솜(Somme)의 앙(Ham), 부슈뒤론(Bouches-du-Rhone) 도의 이프(If), 오랭(Haut-Rhin)의 랑스크롱(Landskronn), 앵(Ain)의 Pierre-Chatel, 멘에루아르(Maine-et-Loire)의 소뮈르(Saumur), 세느(Seine)의 뱅센(Vincennes)의 8곳의 요새가 국가교도소로 선포되었으며, 기존에 여러 곳에 수용되어 있던 수감자들은 이곳들로 분산 이감되었다.¹⁰³⁾ 그 수감자는 원칙적으로는 정치범으로 한정되었지만, 국가의 안녕을 체포의 명분으로 설정한 헌법 46조가 거의 모든 예방적 구금의 근거였던 것으로 말미암아 정치범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의 수감자들 또한 이곳에 투옥되었다.

이후 1810년 12월의 첫 회의에는 대서기장(archichancelier) 캄바세레스와 법무장관 레네, 육군장관 베르티에(Berthiere), 경찰장관 사바리, 원로원 의장 가르니에(Garnier), 원로원 의원 아브리알, 국가참사 라노(Ragnaud), 불레, 졸리베(Jollivet)와 포르(Faure), 파기원장 말랭(Marlin), 그리고 파기원 검사 뮈레르(Muraire)가 참석했다.¹⁰⁴⁾ 하지만 황제는 당시 제출된 보고서의 질에 만족하지 못했고, 결국 회의는 “각각의 국가교도소 수감자들에 대해 그 기간과 체포의 동기, 그 외 추밀참사회의 견해에 도움이 될 모든 고려사항들을 포함하는 상세한 보고서가 작성될 때까지” 연기되었다. 참사회는 이후 1811년 3월에 재소집 되어 3달에 걸친 5번의 회의가 이루어졌으며, 다섯 범주에 속하는 총 802건의 사례가 검토되어 145명의 석방이 이

103) 이 가운데 랑스크롱은 나폴레옹 체제의 종식에 이르기까지 내부 공사가 끝나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나아가 많은 ‘사소한’ 사건들에 있어서는 공식적으로 선언된 국가교도소가 아닌 일반 형무소나 기타 수용 시설들 역시 관습적으로 예방적 구금에 사용되었다; Michael Sibalis, “Political Prisoners and State Prisons in Napoleonic State”, Philip G. Dwyer and Alan Forrest ed., *Napoleon and His Empire: Europe 1804-1814*(London: Palgrave Macmillan, 2007), p.98.

104) 첫 회의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선 다음을 참조. Ibid., pp.99-101; Woloch, *Napoleon and His Collaborators*, pp.200-204; Lentz, *Nouvelle Histoire du Premier Empire*, pp.329-330.

루어졌다.¹⁰⁵⁾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마지막 감찰이었던 이듬해의 참사회에선 두 차례의 회의 끝에 총 314건이 검토되어 29명이 석방되었다.

체포 명령의 남발로 인한 '무정부상태'를 종식하기 위해 도입된 감찰 제도는 수감자들의 처우에 규칙성을 부여함으로써 억압의 적법성을 보강하고 당대의 비판적 여론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¹⁰⁶⁾ 하지만 그 권한은 자유위원회의 기능과 중첩되는 것이었으며, 결국 원로원은 억압의 남용을 방지할 안전장치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고등 경찰의 통제는 자체평가에 가까운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그리고 감찰의 도입을 통해 경찰력 행사의 자의성과 체제의 전제적 성격이 완화될 수 있었다는 일부 연구자들의 평가와는 달리, 추밀참사회의 권한은 헌법 46조에 근거한 체포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자의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¹⁰⁷⁾ 오히려 이는 지금까지 예외적인 조치로 간주되던 예방적 구금의 사용과 통제에 규칙성을 부여하고, 피구금자들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비정상의 정상화를 달성하기 위함이었다. 즉, 1810년의 법령은 정부 행위에 내포된 자의성을 일탈이 아닌 일상적인 상태로 정식화하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법령의 선포 직후 나폴레옹이 푸셰를 실각시킨 뒤 사바리 장군을 새로운 경찰장관으로 임명한 것도 이러한 노선의 변경에 따른 선택이었다. 예방적 구금이 적법성을 결여한 수단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푸셰는 고등 경찰의 비밀성을 선호하고 그 정식화에 반대했으나, 사바리는 자의성의 제도화에 대한 황제의 선택에 전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이다.¹⁰⁸⁾ 구체제 당시 봉인장 발행 과정에서의 자체 검토 절차와도 유사성을 보였던 이러한 제도는 자연히 당대의 반체제 작가들의 비판에 직면했다.¹⁰⁹⁾

105) 각각의 범주에 따라 분류할 때 156명의 정치범들 가운데 29명, 44명의 불온 성직자들 가운데 4명, 141명의 품행불량자들 중 58명, 340명의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구금된 이들 중 35명, 121명의 부랑자들 가운데 19명이 석방되었다.

106) Lentz, *Nouvelle Histoire du Premier Empire*, p.328.

107) 궁적적 평가들은 다음을 참조. Ibid., p.329; Woloch, *Napoleon and His Collaborators*, p.204.

108) Boudon, *Histoire du Consulat et de l'Empire*, p.326.

109) 구체제 당시 봉인장 감찰 제도에 대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 Strayer, "Lettres de Cachet", pp.88-93.

나아가 1810년의 법령을 피구금자 구제의 법적 성질 변화, 그리고 체제 전반의 점진적인 성격 변화와 연결하여 고찰하는 것 역시 가능하며, 이는 감찰의 주체가 되었던 추밀참사회의 제도적 역사를 함께 다룰 때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추밀참사회의 원형은 구체제 시기의 동명의 조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체제의 추밀참사회는 당대의 여러 참사회들 가운데서도 사법 문제에 특화되었던 기구였으며, 국왕은 이를 통해 고등법원의 재량권을 초과하거나 군주의 권리들과 충돌하는 판결, 혹은 자신의 판단에 비추어 부당하게 실행되었다고 여겨지는 체포를 무효화 시키는 권한을 행사했다. 이처럼 추밀참사회는 국왕이 최고위 통상 법원에 위임했던 사법권을 회수하여 직접 행사하기 위해 동원했던, 그리고 군주의 인격적 연장으로 존재했던 기구였고, 따라서 당대에는 “사법을 보유하는 조직(l'organe de la justice retenue)”으로 일컬어지기도 했다.¹¹⁰⁾ 더불어 구체제의 고등법원이 국왕 권력의 견제를 맡았던 대표적인 기구였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들과 가장 빈번하게 접촉하고 대립했던 추밀참사회의 임무는 사법의 보유자인 국왕의 의지를 관철함으로써 그 권위를 보존한다는 정치적 함의 또한 품고 있었다. 그리고 1802년의 원로원 결의를 통해 설립된 나폴레옹의 추밀참사회는 그 기능과 존재 의의에 있어 구체제 전통의 연장에 해당하는 조직이었다.

추밀참사회의 신설은 1802년의 원로원 결의 작성 과정에서 제1통령 보나파르트가 직접 요구한 사항이었다. 티보도의 회고록에 따르면, 그는 대부분의 경우 서른 명 이상이 참석하는 국가참사회의 규모로 말미암아 기밀로 분류되는 의제들의 보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급박한 사안들의 처리 과정 역시 비효율적이 된다는 견해를 여러 차례 밝혔으며, 따라서 사법과 외교에 관련된 중대사들을 논의할 비상임 고위 회의체인 추밀참

110) 구체제에서 국왕은 사법을 ‘보유’하는 존재로 간주되었으며, 고등법원을 비롯한 사법기구들은 그것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주체들이었다. 추밀참사회의 기능과 고등법원과의 관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 Albert N. Hamscher, “The Conseil Privé and the Parlements in the Age of Louis XIV: A Study in French Absolutism”, *Transaction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vol. 77 no. 2(1987), pp.1-162.

사회를 창설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했다.¹¹¹⁾ 이러한 요구는 최고위 관료들로 구성된 신설 참사회가 의사결정상의 권위를 독점하며 기존 국가참사회의 존재의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으나, 결국 제1통령은 자신의 요구를 1802년의 원로원결의에 반영시키는 데 성공했다.¹¹²⁾ 그리고 공식적으로 설립된 추밀참사회는 세 명의 통령, 두 명의 장관, 두 명의 원로원 의원, 두 명의 국가참사, 그리고 두 명의 레종도뇌르 당상관(堂上官, Grands Officiers)으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제1통령에게 의제의 성격에 따른 추가 지명권이 주어졌던 것으로 말미암아 실제 구성은 매 회기마다 변동했다.¹¹³⁾ 더불어 그 명시적 목적은 외교적 협정을 심사하고 중범죄자의 사면 문제를 의논하는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황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성격의 중대사들이 함께 다루어졌다.¹¹⁴⁾ 그리고 1814년까지 있었던 전체 65차례의 소집과 70번의 회의 가운데 대서기장 캄바세레스와 황후 마리 루이즈(Marie Louise)가 주재했던 14번의 회의를 제외한 모든 모임들에는 나폴레옹이 직접 참석했고, 따라서 회의를 통해 내려지는 결정들에는 황제 본인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¹¹⁵⁾ 그 속기록으로부터 유효한 토론이 발생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 보여주

111) Thibaudeau, *Bonaparte and The Consulate*, pp.257-258.

112) 이후 나폴레옹 체제 하에서의 추밀참사회에 대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 Charles Durand, "Conseils privés, conseils des ministres, conseils d'administration de 1800 à 1814", *Revue d'histoire moderne et contemporaine*, tome 17 no.3(1970), pp.814-818.

113) 세 명의 통령은 제국의 설립 이후에는 황제와 두 명의 제국 고관(grand dignitaire)로 변경되었으며, 후자에는 대서기장과 재무장관(architrésorier) 등이 포함되었다. 나아가 당상관은 레종도뇌르 패용자의 등급 가운데서도 두 번째로 높은 지위에 해당되었으며, 극히 일부의 전문가를 제외하면 이미 원로원이나 회에 소속된 인물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Amson, *Histoire Constitutionnelle Français*, p.429.

114) 가령 세습제국의 설립과 입법부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 역시 추밀참사회에서였으며, 황제의 이혼과 그 가족의 결혼 등 황가의 문제 역시 이곳에서 다루어졌다.

115) 참사회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폴레옹이 지녔던 막대한 존재감에 대한 평가는 다음을 참조. Bergeron, *L'Épisode Napoléonien I*, pp.21-22; Thierry Lentz, "Imperial France in 1808 and Beyond", Broers ed., *The Napoleonic Empire*, p.26.

듯이, 추밀참사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안들과 그 결론은 나폴레옹 본인의 직접적 영향력 아래서 통제되었던 것이다.¹¹⁶⁾

추밀참사회의 직무들 가운데 억압적 수단들의 통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사면에 대한 권한이었다. 우선 1791년의 형법 작성 과정에서 사법의 보유자인 인격체로서의 국왕에게 귀속된 사면의 권한은 법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초법적 특권으로 간주되어 폐지되었고, 이는 혁명의 주요한 사법적 성과들 중 하나로 간주되었다. 1795년의 시에예스가 ‘자연법에 근거한 판결권’이 사면과 전혀 다른 맥락에 위치함을 강조했던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던 것이다. 하지만 1802년의 원로원 결의는 정부의 수반이 보유하는 권리들 중 하나로서 사면을 위한 추밀참사회를 통해 행사되는 사면권을 명시했다.¹¹⁷⁾ 이는 명목상으로는 제1통령이라는 직책에 귀속된 권한이었으나, 나폴레옹의 종신통령 등극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는 그가 행사하는 권리나 다름없게 되었고, 이러한 사법적 권한의 인격적 ‘보유’는 제국의 설립을 통해 보나파르트 황가가 세습권력을 쥐게 되며 법적으로도 인정되었다. 즉, 사면을 위한 추밀참사회의 소집은 나폴레옹이 인격체로서의 본인에게 귀속시키길 원하던 ‘군주제적’ 권한들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제2통령이었던 캄바세레스의 회고를 빌려 표현하자면 그는 “프랑스 정부에 그것이 (혁명을 거친 이후) 결여하고 있었던 구체제적 특성들을 부여하는데 집착했다”는 것이다.¹¹⁸⁾ 그리고 나폴레옹 체제의 종식에 이르기까지, 그 정부의 ‘사적인’ 성격은 점진적으로 강화될 예정이었다.¹¹⁹⁾

116) 훗날 세인트헬레나 섬 유배 당시, 나폴레옹은 동행했던 전 국가참사인 라스 카사스에게 회의에서의 토론이 진정으로 자유로웠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라스 카사스는 조심스럽게 모든 구성원들이 명백하게 황제의 반응을 의식했으며, 의도적으로 미끼를 던져 진짜 의중을 캐내고자 하는 나폴레옹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하기 더욱 힘든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고백했다. 이에 나폴레옹은 실망을 표하며 자신은 더 다양한 견해를 듣고 싶었을 뿐이지 반대 의견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회고했다. *Las Cases, Memorial de Sainte Helene*, p.149.

117) Lentz, *Nouvelle Histoire du Premier Empire*, pp.79-80.

118) Jean Jacques Régis de Cambacérès, *Mémoires Inédits de Cambacérès: Eclaircissements publiés par Cambaceres sur les principaux évènements de sa vie politique*, vol. 1(Paris: Perrin, 1999), p. 489.

예방적 구금의 승인과 감찰을 추밀참사회가 전담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러한 군주제적 특성 강화의 일환이었다. 이는 중요한 인물들의 처우가 참사회 전반의 결정을 통제하던 황제의 판단에 종속되도록 만들었으며, 결정된 사안이 사면을 위한 추밀참사회를 통해 공표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피구금자의 구제는 고등 경찰에 의해 체포된 죄수에게 내려지는 사면의 성질을 띠게 되었다.¹²⁰⁾ 이는 명시적으로는 자유위원회에 의해 행해지는 구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지라도 본질에 있어서는 상이한 맥락에 위치하는 절차였다. 우선 자유위원회의 전신인 헌법재판소 이론에서, 피구금자들의 구제란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에 기초하여 평등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권한이었으며, 이는 억압의 주체를 감시하는 ‘합헌성의 수호자’에 의해 행사됨으로써 권력의 분할과 균형을 원칙을 반영했다. 물론 자유위원회의 구제는 그 이론적 원형과는 달리 자연법에 따른 판결권이 아닌 헌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는 여전히 행정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원로원이 헌법의 규정들로부터 이탈하여 예외적으로 발생한 자의성을 통제하는 형태를 취했다. 하지만 1810년의 법령을 통해 예방적 구금이 정식화된 이후, 이제 자의적인 억압의 실행과 통제 모두는 인격체로서의 황제가 사면의 추밀참사회를 거쳐 집도하는, 그리고 세습 권력이 보유하는 정의에 맡겨지게 되었다. 억압과 그 통제라는 영역에서, 나폴레옹 체제는 보편적 기본권에 근거하여 중앙의 권력을 통제한다는 최초의 이론적 구상에서 현실적인 사회경제적 보장을 위한 원칙들에 근거하는 합의로, 그리고 다시 명목적인 원칙까지도 무시할 수 있는 황제의 사적인 권력으로 이어지는 변화를 거쳤던 것이다.

하지만 소수의 반체제 작가들을 제외하면 이러한 변화에 대해 가시적이거나 집단적인 반발이 있었다는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¹²¹⁾ 황제의 사적 권력 강화는 이미 권력의 자의성을 승인하는 내용을 품고 있던 ‘합의’의 논리적 연장과도 같았고, 체제의 수혜자였던 명사 집단은 정립된 질서를 유지

119) 나폴레옹 체제의 군주제적 특성 강화에 대한 비판적 입장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을 참조. Lefebvre, *Napoléon*, pp.371-373.

120) Durand, “Conseils privés”, p.817.

121) Boudon, *Histoire du Consulat et de l'Empire*, p.124.

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황제의 참사회와 원로원을 구성했던 최상위 정치 엘리트 집단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일부가 남아 있는 회의의 기록 역시 감찰의 과정과 최종의 결정이 황제의 의사에 사실상 종속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가령 1811년의 회의에서, 보고서 작성을 총괄했던 국가참사 졸리베는 열성 자코뱅 지식인인 드멜로(Demallot)와 바쟁(Bazin), 그리고 전 올빼미당원인 피오제(Pioger)의 체포가 그들이 새로운 음모에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그 석방은 몇몇 참사들과 황제에 의해 거부되었는데, 실제로 범죄에 가담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러한 인물들은 “자유로이 두기에는 지나치게 위험한” 자들이라는 것이다.¹²²⁾ 나아가 1812년의 회의에선 예방적 구금의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황제는 그 구금 기한의 상한선을 돌지언정 “근본 없는 불량배들(gens sans aveu), 매춘부, 사기도박꾼, 난폭한 마차 운전수” 등도 질서의 효율적인 유지를 위해 투옥될 수 있다는 입장만은 바꾸지 않았다.¹²³⁾ 나아가 배심원단에게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의 구금에 대해서도 논쟁이 불거졌고, 이는 혁명의 가장 대표적인 사법적 성과였던 배심제의 존재 의의와도 연결된 것이었다. 하지만 황제는 그러한 관행 자체를 포기하기에는 ‘잠재적인 위험’이 너무 크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추후 별도의 위원회를 조직하여 해당 범주의 피구금자들을 추가로 감찰하겠다는 대안만을 제시했다.

그러나 회의 과정에서 도입이 예고된 제도들은 프랑스 제1제국의 몰락으로 말미암아 현실화되지 못했다. 나폴레옹의 부재와 외교적 위기로 말미암아 1813년부터 소집되지 못했던 추밀참사회는 1814년에 공식적으로 해산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유위원회 역시 같은 해 5월의 마지막 모임을 끝으로 원로원과 함께 해체되었다.

122) Woloch, *Napoleon and His Collaborators*, p.202.

123) Ibid., p.203.

VI. 결론

나폴레옹의 ‘폭정’에 대한 전설의 핵심을 이루었던 ‘자의적 구금’과 그 통제는 보다 넓은 맥락과 함께 다루어져야만 하는 주제이다. 자의적 구금이 당대 정치적 논쟁의 장에서 지녔던 상징성은 봉인장과 산악파 독재에 얽힌 역사적 기억들과 연결되며,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 시에예스가 제시했던 이론은 권력의 분할과 정치적 자유, 자연법과 헌법의 관계에 대한 계몽주의 전통에서의 논의를 계승했다. 그리고 억압의 통제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에 대한 구상은 프랑스 제1제국의 탄생과 함께 원로원 자유위원회를 통해 실현되었으나, 그 현실적 활동의 양상은 나폴레옹 체제의 설립 이념이 되었던 정치적 합의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원형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보편적 권리들에 대한 형이상학적 논의보다는 강력하고 실용적인 정치적 통제를 요구했던 자유주의적 권위주의자들, 그리고 그들을 확고한 권력의 기반으로 삼기를 원했던 나폴레옹 사이의 합의는 개인의 자유, 혹은 자유권을 완전하고 불가침한 가치로서 보장하고자 하지 않았으며, 그것을 구성하는 권리들에는 명사들의 사회경제적 자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약이 가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 구성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뚜렷한 한계를 보였으며, 이후 국가교도소의 탄생과 추밀참사회의 감찰 도입을 통해 정부 행위의 자의성이 정상화되고 황제의 권한이 보강되며 원로원은 억압을 통제하는 견제자로서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논의의 결론으로서 제도적 안전장치들의 변천사를 통해 들여다볼 수 있는 나폴레옹 체제에서의 권력의 성격변화를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 그것은 최초의 이론, 이후의 현실적 맥락 아래서의 변화, 그 결과로 야기된 최초의 이상으로부터의 보다 완전한 이탈로 정리될 수 있다. 나폴레옹 체제는 보편적 권리에 근거하여 권력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구비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이후 역사적 경험과 새로이 출현한 계급의 요구에 따라 기본권에 대한 ‘형이상학’이 헌법으로부터 배제되었다. 이

는 혁명이 탄생시킨 질서의 공백에 유산가 계급이 주도하는 ‘근대 사회’의 논리를 채워 넣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균열을 억압적 수단을 통해 메꾸는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으며, 따라서 정부의 권력과 그 한계는 어떠한 상위의 원리가 아닌 구체적인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만 규정되었다. 그리고 1810년에 이르러서는 황제가 억압의 행사와 통제 모두를 장악하게 됨으로써, 나폴레옹은 과거의 국왕과 같이 사법을 ‘보유’하게 되며 그 권력의 구체제적인 성격을 강화했다. 사회경제적 영역을 중심으로 혁명의 성과를 선별적으로 보존하는 과정에서, 나폴레옹 체제는 권력의 자의성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는 혁명의 원칙을 점진적으로 포기했고, 그 결과 입헌주의와 권력 분립에 근거했던 최초의 설계로부터 이탈하여 권력의 사적이며 구체제적인 성격이 두드러지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참고 문헌

I. 1차 사료

1. 정부문서

“Bulletin des Lois N.271. Décret Impérial Concernant les Prisons d’État”, *Bulletin des Lois de L’Empire Français 4. Séries. Tome Douzième*(1810).

Commission de la Liberté Individuelle(1802-1814) Inventaire des Articles O^o 1430 à 1436 et CC 60 à 63(Paris: Archives Nationales, 1989).

Joseph Fouché, *Rapports et proclamations du Ministre de la police générale(1799-1810)*(Paris: Zanzibar, 1998).

Lenoir-Laroche, *Rapport Fait au Sénat dans Sa Séance du 30 Vendemiaire an XIII au Nom de la Commission Senatoriale de la Liberté Individuelle*(1805).

Recueil des Pièces et Actes Relatifs à l’Établissement du Gouvernement Impérial Héritaire(Paris: L’Imprimerie de P.Didot l’Ainé, 1804).

Sénatus-Consulte Organique(Paris: L’Imprimerie de la République, 1804).

2. 회고록

Antoine-François Ève, *Tableau Historique des Prisons D'État en France sous le Règne de Buonaparte*(Paris: Libraires du Palais-Royal, 1814).

J.-J. de Couso, *Observations Relatives au Despotisme Militaire Exercé en France pendant la Trop Longue Domination de Napoléon Buonaparte*(Paris: Libraires du Palais-Royal, 1821).

Le bon Pelet, *Opinions de Napoléon: Sur Divers Sujets de Politique de d'Administration, Recueillies par un Membre de Son Conseil d'Etat et Récit de Quelques Évènements de l'Époque*(Paris: Firmin Didot Frères, 1833).

Jean-Guillaume Locré, Jean Bourdon ed., *Napoléon au Conseil d'État: Notes et Procès-Verbaux Inédits de Jean-Guillaume Locré, Secrétaire Général du Consil d'État*(Paris: Éditions Berger-Levrault, 1963).

Jean Jacques Régis de Cambacérès, *Mémoires Inédits de Cambacérès: Eclaircissements publiés par Cambaceres sur les principaux évènements de sa vie politique*, vol 1&2(Paris: Perrin, 1999).

Pierre-Louis Roederer, *Mémoires sur la Révolution, le Consulat et l'Empire*(Paris: Plon, 1952).

The Count de Las Cases, *Memorial de Sainte Helene: Journal of The Private Life and Conversations of The Emperor Napoleon at Saint Helena*(Lexington, K., Printed by Thomas Smith, 1823).

Antoine Claire Thibaudeau, G. K. Fortescue trans., *Bonaparte and The Consulate*(New York:The Macmillan Company, 1908),

3. 논저

Benjamin Constant, Biancamaria Fontana trans. and ed., *Political Writings*(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Benjamin Constant, Dennis O’Keeffe trans. and ed., *Principles of Politics Applicable to All Governments*(Indianapolis: Liberty Fund, 2003).

Pierre-Louis Roederer, Forsyth Murray Greensmith trans. and ed., *The Spirit of the Revolution of 1789 and Other Writings on the Revolutionary Epoch*(London: Scolar Press, 1989).

Emmanuel-Joseph Sieyès, Paul Bastid ed., *Les Discours de Sieyès dans les Débats Constitutionnels de l’An III 2 et 18 Thermidor*(Paris: Librairie Hachette, 1939).

Emmanuel-Joseph Sieyès, Mrs. M. Blondel *et al* trans., Oliver W.Lembcke and Florian Weber ed., *Emmanuel Joseph Sieyès: The Essential Political Writings*(Leiden: Brill, 2014).

4. 기타 출간사료

Napoléon Bonaparte, Captain The Hon. D. A. Bingham trans. and ed., *A Selection From The Letters and Despatches of The First Napoleon, Vol. II*(London: Chapman and Hall, 1884).

Napoléon Bonaparte, Christopher Herold J. trans. and ed., *The Mind of Napoleon: A Selection of His Written and Spoken Words*(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5).

Napoléon Bonaparte, John Eldred Howard trans. and ed., *Letters and Documents of Napoleon, Vol. I*(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1).

II. 연구 문헌

1. 논문

Howard G. Brown, “Domestic State Violence: Repression From The Croquants to The Commune”, *The Historical Journal*, vol. 42, no. 3(1997), pp.597-622.

Howard G. Brown, “From Organic Society to Security State: The War on Brigandage in France, 1797-1802”,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vol.69, no.4(1997), pp.661-695.

Jean-Luc Chappey, "La notion d'Empire, et la question de la légitimité politique", *Siècles : cahiers du Centre d'Histoire des Espaces et Cultures N. 17* (2003), pp.1-15.

Jean-Luc Chappey, "Pierre-Louis Roederer et la presse sous le Directoire et le Consulat : l'opinion publique et les enjeux d'une politique éditoriale",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n°334(2003), pp.1-21.

Christine Dousset-Seiden, "La Nation française et l'Antiquité à l'époque napoléonienne", *Anabases Traditions et réceptions de l'Antiquité*, vol.1(2011), pp.59-74.

François Crouzet, "Wars, Blockade, and Economic Change in Europe, 1792-1815",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24, no. 4 (1964), pp. 567-588.

Charles Durand, "Conseils privés, conseils des ministres, conseils d'administration de 1800 à 1814", *Revue d'histoire moderne et contemporaine*, tome 17 no.3(1970), pp.814-828.

Philip G. Dwyer, "Napoleon and The Foundation of The Empire", *The Historical Journal* vol 53, issue 2(2010), pp.339-358.

Marco Fioravanti, "Sieyès et le jury constitutionnaire: perspectives historico-juridique",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no.3(2007), pp.87-103.

Marco Goldoni, "At the Origins of Constitutional Review: Sieyès' Constitutional Jury and the Taming of Constitutional Power",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 32, no. 2(2012), pp.211-234.

Albert N. Hamscher, "The Conseil Privé and the Parlements in the Age of Louis XIV: A Study in French Absolutism", *Transaction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vol. 77 no. 2(1987), pp.1-162.

Peter Hicks, "The Napoleonic 'Police' or 'Security State' in Context", *Napoleonica. La Revue*, N.4(2009), pp.2-10.

Annie Jourdan, "Le Premier Empire, Un Nouveau Pacte Social", *Cités* N. 20(2004), pp.51-64.

Igor Moullier, "Police et Politique de la Ville sous Napoléon", *Revue d'Histoire Moderne et Contemporaine*, N.54-2(2007), pp.117-139.

Marc Raeff, "The Well-Ordered Police State and the Development of Modernity in Seventeenth- and Eighteenth-Century Europe: An Attempt at a Comparative Approach",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80, no.5(1975), pp.1221-1243.

Ruth Scurr, "Pierre-Louis Røederer and the Debate on Forms of Government in Revolutionary France", *Political Studies*, vol. 52 no.6(2004), pp.251-268.

Ruth Scurr, "Social equality in Pierre-Louis Roederer's interpretation of the modern republic, 1793", *History of European Ideas*, vol. 26 no.2(2000), pp.105-126.

Michael Sibalis, "Prisoners by Measure de Haute Police Under Napoleon I: Reviving the Lettres de Cachet", *Proceedings of The Annual Meeting of The Western Society for French History*, vol.18(1991), pp.261-269.

Michael Sibalis, "Un aspect de la Légende noire de Napoléon: Le Mythe de l'Enfermement des Opposants comme Fous", *Revue de l'Institut Napoleon*, vol.156(1991), pp.8-24.

Brian-Eugene Strayer, "Lettres de Cachet and Social Control in the Ancien Regime", PhD Diss., The University of Iowa(1987).

2. 단행본

Daniel Amson, *Histoire Constitutionnelle Français de la Prise de la Bastille à Waterloo*(Paris: Lextenso Éditions, 2010).

François Antoine *et al*, *L'Empire Napoléon: Une Expérience Européenne?*(Paris: Armand Colin, 2014).

Alphonse Aulard, *Études et Leçons sur la Révolution Français*(Paris : Félix Alcan, 1920).

Vida Azimi, *Les Premiers Sénateurs Français: Consulat et Premier*

Empire 1800-1814(Paris: Picard, 2000).

Keith-Michael Baker, *Inventing the French Revolution: Essays on French Political Culture in the Eighteenth Century*(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Louis Bergeron, *L'Épisode Napoléonien I. Aspects Intérieurs 1799-1815*(Paris: Éditions du Seuil, 1972).

Michel Biardet *al*, *Révolution, Consulat, Empire 1789-1815*(Paris: Belin, 2014).

Boudon Jacques-Olivier *et al*, *Police et Gendarmerie dans l'Empire Napoléonien*(Paris: Editions SPM, 2013).

Jacques-Olivier Boudon, *Histoire du Consulat et de l'Empire 1799-1815*(Paris: Éditions Perrin, 2003).

Michael Broers ed., *The Napoleonic Empire and the New European Political Culture*(London: Palgrave Macmillan, 2012).

Michael Broers, *Europe Under Napoleon 1799-1815*(London: Arnold, 1996).

Howard G. Brown and Miller Judith A. ed., *Taking Liberties: Problems of A New Order From The French Revolution to Napoleon*(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2).

Howard G. Brown, *Ending the French Revolution: Violence, Justice and Repression From The Terror to Napoleon*(Charlottesville: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2006).

David L. Dowd ed., *Napoleon: Was He the Heir of the Revolution?*(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57).

William Doyle, *France and The Age of Revolution: Regimes Old and New from Louis XIV to Napoleon Bonaparte*(New York: I.B. Tauris, 2013).

Philip G. Dwyer and Alan Forrest ed., *Napoleon and His Empire: Europe 1804-1814*(London: Palgrave Macmillan, 2007).

Philip G. Dwyer ed., *Napoleon and Europe*(London: Longman, 2001).

Catharine Edwards *et al.*, *Roman Presences: Reception of Rome in European Culture, 1789-1945*(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Geldereren Martin Van and Skinner Quentin ed., *Republicanism: A Shared European Heritage, Vol.2: The Values of Republicanism in Early Modern Europe*(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ieter Geyl, *Napoleon: For and Against*(London: Penguin Books,

1949).

Jacques Godechot, *Les Institutions de la France sous la Révolution et l'Empire*(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51).

Alexander Grab, *Napoleon and The Transformation of Europe*(London: Palgrave Macmillan, 2003).

Donald Greer, *The Incidence of The Terror During The French Revolution: A Statistical Interpretation*(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35)

Wayne Hanley, *The Genesis of Napoleonic Propaganda, 1796-1799*,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5).

Sudhir Hazareesingh, *The Legend of Napoleon*(London: Granta Books, 2004).

Robert B. Holtman, *Napoleonic Propaganda*,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50).

Lynn Hunt, *Politics, Culture, and Class in the French Revolution*(London: Methuen & Co., 1986).

Andrew Jainchill, *Reimagining Politics after the Terror: The Republican Origins of Fench Liberalism*(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2008).

- Georges Lefebvre, *Napoléon*(London: Routledge Classics, 2011).
- Thierry Lentz, *Le Grand Consulat: 1799-1804*(Paris: Fayard/Pluriel, 2014).
- Thierry Lentz, *Nouvelle Histoire du Premier Empire III. La France et l'Europe de Napoléon 1804-1814*(Paris: Fayard, 2007).
- James Livesey, *Making Democracy in the French Revolution*(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 Martyn Lyons, *Napoleon Bonaparte and The Legacy of The French Revolution*(Houndmills: Macmillan, 1994).
- M. Alexandre Parodi, *Le Conseil d'État: Son Histoire à Travers les Documents d'Époque 1799-1974*(Paris: Éditions du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1974).
- Pasquale Pasquino, *Sieyes et L'Invention de la Constitution en France*(Paris: Éditions Odile Jacob, 1998).
- François Pietri, *Napoléon et le Parlement ou la dictature enchaînée*(Paris: Fayard, 1955).
- J. G. A. Pocock, *Politics, Language, and Time: Essays on Political Thought and History*(New York: Atheneum, 1973).
- Pierre Rosanvallon, *Pour une Histoire Conceptuelle du Politique:*

Leçon inaugurale au Collège de France faite le jeudi 28 mars 2002(Paris: Éditions Du Seuil, 2003).

Rowe Michael ed., *Collaboration and Resistance in Napoleonic Europe: State-formation in an Age of Upheaval, c. 1800-1815*(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3).

Diana Rowell, *Paris: The 'New Rome' of Napoleon* (London: Bloomsbury, 2012).

Jean Thiry, *Les Attributions du Sénat du Premier Empire Concernant la Justice et les Droits Individuels*(Paris: Librairie Arthur Rousseau, 1922).

Jean Tulard, Teresa Waugh trans., *Napoleon: The Myth of The Saviour*(London: Methuen&Co., 1984).

Isser Woloch, *Napoleon and His Collaborators: The Making of A Dictatorship*(New York: W.W. Norton&Company, 2001).

Isser Woloch, *The New Regime: Transformations of the French Civic Order, 1789-1820s*(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94).

알베르 소블, 최갑수 역, 『프랑스혁명사』(서울: 교양인, 2018).

최갑수 외 공저, 『프랑스 구체제의 권력구조와 사회』(서울: 한성대학교 출판부, 2009).

프랭크 매클린, 조행복 역, 『나폴레옹: 야망과 운명』(서울: 교양인, 2016).

Abstract

Violation of Personal Freedom and the Character of the Napoleonic Regime 'Arbitrary Detention' and its Institutional Control

Byoung Chan An
Department of Wester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Napoleonic regime, which encompassed the Consulate and the First French Empire, established political and social stability via various oppressive methods, especially in the employment of the high policing. Yet, the system also possessed institutional safeguards to provide checks against the intensity and scale of such means and to prevent emergence of despotism. They were the Senatorial Commission of Personal Liberty, established in 1804 as one of several internal commissions formed by the Conservative Senate, and annual inspections of State Prisons by the Privy Council, introduced in 1810. Their given objective was to maintain constitutionality of the government by monitoring legitimacy of arrests and detentions and the release of those

imprisoned arbitrarily.

Such institutional safeguards, however, have not had a thorough investigation in the existing literature. Scholars beginning from the twentieth century, including Alphonse Aulard, have concluded that the Commission and the Conseil's annual inspections were nothing but window dressings; most studies on the Napoleonic system omit or only roughly describe these institutions. Some in recent year, such as Isser Woloch, have devoted a portion of their studies to these safeguards but they have largely focused on statistical evaluations of results.

This article aims to supplement points that earlier works have overlooked: First, previous research on institutional safeguards had not paid enough attention to Sieyès' idea concerning control of constitutionality, especially his suggestion in 1795, which became the direct theoretical prototype for the Commission of Personal Liberty. Sieyès had advocated policing repressive methods and arbitrariness of a governmental action, an idea also aligned with the founding philosophy of the Napoleonic system as a whole. Second, the influences of the broader context, especially the economic situation that led to the birth of the Napoleonic system, on foresaid institutional safeguards require a more thorough discussion. The factors that explain how and why these institutions changed or derailed from their original plans and intentions need further analysis. Third,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forces behind the transition from the Senatorial Commission to the Privy Council in 1810 also need illumination. The fact that the latter practically replaced the authority of the former is a specific example of the aforementioned change in the

way governmental oppression was checked, yet earlier studies have not given sufficient attention to the significance of this transition. In discussing these ideas, this article seeks to constitute a comprehensive description explaining the theoretical origin, birth and reality of institutional safeguards against government oppression in the Napoleonic system. This work also outlines the changes in the character of governmental power in the Napoleonic era.

Keywords: Bonaparte Napoléon, French Consulate(Consulat), First French Empire(Premier Empire), high policing(haute police), Conservative Senate(Sénat Conservateur), Senatorial Commission of Personal Liberty(Commission Sénatoriale de la Liberté Individuelle), Privy Council(Conseil privé), State Prison(Prison d'État)

Student Number: 2015-22461